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자주 묻는 질문

환경총국 (DG ENV) B01과
2026년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환경총국 B국(경쟁력 있는 순환경제·청정 산업 정책국)
B.1과(바이오경제·지속가능 소재과)

문의: B.1과
전자우편: ENV-B01-ARES@ec.europa.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B-1049 브뤼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자주 묻는 질문

환경총국

2026년
이 문서는 2026년 3월 처음 작성했으며 2026년 8월에 수정했다.

제2판

이 문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위해 작성한 것이나 작성자의 견해만을 반영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출판물의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문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적용에 있어 경제주체·국가 당국·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출판국, 2026년

© 유럽연합, 202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문서의 재사용 정책은 [2011년 12월 12일 자]「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문서의 재사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2011/833/EU」(유럽연합 관보 L편 제330호, 2011. 12. 14., 39면)에 따라 시행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 문서의 재사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CC BY 4.0) 라이선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에 따라 허용한다. 이는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고 변경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단, 유럽연합에 저작권이 없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해야 할 수 있다.

PDF ISBN 978-92-68-42316-5 doi: 10.2779/4868962 KH-01-26-068-EN-N

목차

I. 대상·적용 범위에 관한 개요 5

II. 정의 7

III. 우려물질 15

IV. 재활용 용이성 22

V.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 26

VI. 퇴비화 가능성 30

VII. 포장 최소화 31

VIII. 표시 34

IX. 환경 관련 표시·광고 35

X. 제조자의 의무 36

XI. 빈 공간 42

XII. 특정 포장재의 금지 및 사용 43

XIII. 재사용 및 리필 46

XIV. 플라스틱 운반 봉투 52

XV. 포장재의 적합성 평가 53

XVI. 신규 규칙의 집행(**2026년 8월 12일 적용일 직후**) 58

XVII. 폐기물 발생 예방 59

XVIII. 생산자책임재활용 61

XIX. 반납 및 수거 체계 64

XX. 보증금반환제도 65

약어

CMO:	[2013년 12월 17일 자]「농산물 시장 공동조직을 수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DfR: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
DRS:	보증금반환제도(Deposit and Return System)
DSA:	[2022년 10월 19일 자]「디지털 서비스 단일 시장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2065호」
ECHA: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O: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S: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
ESPR:	[2024년 6월 13일 자]「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를 수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FCM:	[2004년 10월 27일 자]「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물질 및 제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35/2004호」에 따라 규제되는 식품접촉물질(Food-contact material)
FIBC:	유연중형산적용기(Flexible Intermediate Bulk Container)
FIC:	「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EU) 제1169/2011호」(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HoReCa:	숙박·외식·급식업(Hotel, Restaurant and Catering)
IBC:	중형산적용기(Intermediate bulk containers)
JRC: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NACE:	유럽연합 표준산업분류(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Union (EU))
OJEU: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PFAS:	과불화화합물(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PWD:	[1994년 12월 20일 자]「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
PPWR:	[2024년 12월 19일 자]「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RO:	생산자책임조직(Producer Responsible Organisation)
REACH:	[2006년 12월 18일 자]「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유럽화학물질청 설립)

SoC: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UPD: [2019년 6월 5일 자]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영향 저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904호」(Single-Use Plastics Directive)

TRIS: 내부시장 내 기술장벽 방지를 위한 「지침(EU) 제2015/1535호」에 따른 절차(Technical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WFD: [2008년 11월 19일 자] 「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8/EC」(Waste Framework Directive)

XPS: 압출폴리스티렌(Extruded Polystyrene)

I. 대상·적용 범위에 관한 개요

이 문서는 제2판으로, 2026년 3월에 발행된 초판 대비 신규 및 수정된 정보를 담고 있다. 초판 발행 이후 변경된 사항은 문서 전반에 걸쳐 적절히 '[신규]' 또는 '[수정]'으로 표시한다.

「규정(EU) 제2025/40호」[1]는 유럽연합 전역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조화된 법적 틀을 수립한다. 이 규정의 주된 목적은 내부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포장재와 연관된 환경·건강 영향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침 94/62/EC」[2]를 대체하여 모든 경제주체·회원국에 더 명확하고 엄격하며 통일된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포괄적이다. 이 규정은 사용한 재질과 관계없이, 유럽연합 내 생산 여부나 제3국 수입 여부를 불문하고, 빈 상태이거나 제품을 채운 상태로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한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재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포장재란 그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제품의 보관·보호·취급·전달·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를 이루며 해당 제품과 함께 폐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규정(EU) 제2025/40호」는 포장재에 관한 각국의 조치를 조화시키고, 시장 분절을 방지하며, 지속할 수 있는 관행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재활용 용이성·다회용포장재 목표, 유해물질 제한, 친환경설계·표시 요건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시급한 환경적 과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원국에 걸쳐 영업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일반 **적용일**은 2026년 8월 12일이나, 특정 조항들은 그 이후에 적용한다(예: 재활용 용이성·재생원료 함량 목표·포장재 출시 금지·2030년까지의 다회용포장재 목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2018년 수준 대비)(제43조)
- **재활용 용이성:** 모든 포장재는 2030년까지 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제6조).
- **재사용 목표:** 수송포장재·전자상거래포장재·음료 포장재에 적용(제29조)
- **제한 사항:** 2030년 1월 1일부터 특정 1회용포장재 형식의 출시 금지(제25조 및 부속서 V),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접촉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 기준 준수 의무화

(제5조제5항)

---

[1] [2024년 12월 19일 자]「규정(EU) 제2019/1020호 및 지침(EU) 제2019/904호를 개정하고 지침 94/62/EC를 폐지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유럽연합 관보 L 편 제2025/40호, 2025. 1. 22.)*

[2] [1994년 12월 20일 자]「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유럽연합 관보 L 편 제365호, 1994. 12. 31., 10 면)*

- **빈 공간 제한:** 묶음포장재·수송포장재·전자상거래포장재의 경우 최대 50%로 제한(제24조)
- **보증금반환제도 의무화:** 음료 캔·플라스틱병에 적용(제50조)
- **표시:** 모든 포장재에 대한 조화된 분리배출 표시(제12조제1항)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 의무 강화(제44조~제47조)

이 문서는 이 규정 채택 이후 환경총국에 접수된 일부 쟁점을 명확히 하고 질문에 답변한다. 이 문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규정(EU) 제2025/40호」에 관한 지침 문서인 집행위원회 통지문(이하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라 한다)을 보완한다.

II. 정의

포장재의 정의

1) 포장재의 정의 중 '*...빈 상태이거나 제품을 채운 상태...*'라는 문구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따른 포장재 및 제조자의 정의를 변경하는가?

제3조제1항제1호는 「지침 94/62/EC」에서 규정하는 포장재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는 '*...빈 상태이거나 제품을 채운 상태...*'라는 새로운 문구를 포함한다. 이 문구는 포장재 또는 제조자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적용되는 다양한 실제 상황과 포장재 유형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포장재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를 참조한다.

2) 차 및 커피용 포장재의 정의에서 제3조제1항제1호f목이 아닌 g목에만 '*기계 사용*'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문구는 필터 커피나 티백 방식과 커피 추출기 방식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기계 사용은 차 또는 커피 캡슐이 제3조제1항제1호f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g목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이다. 투과성은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요소이다.

이러한 구별은 제9조의 퇴비화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제품과 함께 사용하고 폐기하도록 의도한 투과성 있는 차, 커피 또는 기타 음료용 백, 혹은 차, 커피 또는 기타 음료가 들어 있고 사용 후 부드러워지는 1회분 개별 포장 단위(제1호f목)는 의무적으로 퇴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에서 사용할 의도로 고안하며 제품과 함께 사용하고 폐기하는 비투과성 차, 커피 또는 기타 음료 방식의 1회분 개별 포장 단위(제1호g목)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회원국은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수거 및 폐기물 처리 기반 시설의 존재와 같은 특정 조건하에서 자국 역내에서 후자를 의무적으로 퇴비화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금속 캡슐과 관련하여 퇴비화 가능성을 금지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3) 서신, 청구서, 명세서 및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서류를 담고 있는 봉투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따른 포장재로 보아야 하는가? [신규]

어떤 물품이 포장재에 해당하는지는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포장재의 정의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규정 부속서 I은 포장재로 보는 물품과 보지 아니하는 물품의 예시 목록을 규정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조제1항에서 포장재란 '*그 제작 재료와 관계없이,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 또는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전달·진열하는 데 사용하도록 고안된 물품으로서, 그 기능, 재료 및 설계에 따라 포장재 형식별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서신, 청구서, 명세서 및 기타 서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따른 포장재 정의 목적상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서류를 담고 있는 봉투는 '*제품의 보관, 보호, 취급, 전달·진열*'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는 제품의 보관, 보호, 취급, 전달·진열을 목적으로 하는 빈 봉투는 물론, 제품(카탈로그나 잡지 등)을 담고 있는 봉투와 대조되며, 이 두 가지는 모두 포장재로 본다.

마지막으로, 사적 사용을 위해 슈퍼마켓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빈 봉투는 포장재로 보지 아니한다.

4) 판매포장재, 묶음포장재 및 수송포장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신규]

판매포장재, 묶음포장재 및 수송포장재는 의도한 용도에 따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다. 이들은 또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내에서 서로 다른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판매포장재(제3조제1항제5호)란 제품과 함께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재를 말한다. 판매포장재는 흔히 제품과 직접 접촉하며, 제품의 특별한 필요와 특성에 기초해 특정 제품에 맞게 조정된다. 또한 판매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상표 표시 및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사용한다.

묶음포장재(제3조제1항제6호)란 여러 개의 판매 단위(포장한 제품)를 하나로 묶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 포장재에는 흔히 특정 제품의 이름이 표시되며, 제품의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 이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개별 제품에 맞게 조정되는데, 그 목적은 가령 재고 관리나 진열대 진열을 쉽게 하거나 소비자가 둘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다.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묶음포장재는 상업적 환경 또는 소비자의 거주지에서 폐기될 수 있다.

수송포장재(제3조제1항제7호)란 포장한 제품의 외부층을 형성하며 판매 단위의 운송 중에 사용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 포장재에는 흔히 물류, 운송 및 보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수송포장재는 포장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고 취급을 수월하게 한다. 따라서 판매포장재 및 묶음포장재보다 더 표준화하고 크기가 크며 견고한 경우가 많고, 주로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환경에서 폐기한다.

그러나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판매에 사용하는 특별한 형태의 수송포장재인 전자상거래포장재(제3조제1항제8호)는 흔히 소비자의 거주지에서 폐기한다.

'제조자'의 정의

5) 수송포장재의 제조자는 누구인가? [신규]

포장재의 정의(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송포장재는 '...제품의 보관, 보호, 취급, 전달·진열...'을 위해 사용될 의도로 제조되어 시장에 출시될 때 포장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송포장재의 제조자가 누구인지는 빈 포장재가 최종 형태에 도달한 단계에서 특정해야 한다. 추가적인 구성요소나 부수적 요소를 더하지 않고도 수송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포장재는 최종 형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장에서 재료를 성형하거나 그 자체로는 포장 기능을 하지 않는 구성요소로 포장재를 만들어내는 등의 실질적인 포장재 조립 또는 변형 작업과, 단순히 제품의 운송, 취급, 판매를 위해 여러 포장재를 결합하는 작업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포장 물품(테이프, 랩, 상자, 팔레트 등)을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각 물품이 이미 최종 형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포장한 제품의 단일 선적에 여러 제조자의 포장재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제조자는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할 때 EU 적합성 선언에 적용되는 요건과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판매포장재, 묶음포장재, 서비스 포장재 및 1차 생산 포장재도 또한 같이, 수송포장재에 명칭이나 상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조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누가 해당 포장재를 주문하고 설계 사양을 결정하는지가 된다. 상표가 없는 일반 수송포장재의 경우 이 기업은 통상 포장재를 물리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수송포장재에 명칭이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포장재에 명칭이나 상표가 표시된 기업을 제조자로 본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지침 제2항목을 참조한다.

다음은 수송포장재의 제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두 가지 예시이다.

- 판지 상자는 납작하여 접어야 하는 상태일지라도 최종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본다. 상자에 명칭이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을 '제조자'로 본다. 상표가 없는 표준화된 판지 상자의 경우 상자를 물리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을 '제조자'로 본다. 기업이 배송 목적으로 상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이를 상표 표시로 보지 않으며 해당 기업을 '제조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 팔레트에 적재된 포장 제품을 안정화하기 위한 스트레치 랩은 롤 형태로 판매될 때 포장재로 보아야 하며, 이는 나중에 팔레트 화물을 포장하기 위해 절단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조자'란 랩을 구매하여 물품 고정에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상표가 없는 경우 해당 랩을 물리적으로 제조하여 포장재로서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상표가 표시된 포장재의 '제조자'는 누구인가? [신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포장재에 명칭이나 상표가 없는 경우, 제조자는 포장재 또는 포장한 제품을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된다.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체 명칭이나 자체 상표로 포장재 또는 포장한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해당 주체를 제조자로 보아야 한다. 이는 포장재나 포장한 제품에 다른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지와는 무관하다.

포장에 명칭이나 상표가 있는 경우, 제조자는 해당 포장이 시장에 출시될 때 사용한 명칭이나 상표의 소유자인 경제주체이며, 다른 경제주체가 물리적으로 제조나 충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이 경제주체가 영세기업이고 공급자가 동일한 회원국에 소재한 경우, 포장 또는 포장한 제품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본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지침 제2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포장재나 포장한 제품에 특정 명칭이나 상표가 있는 경우, 해당 명칭이나 상표의 소유자가 공급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결정적인 권한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포장재의 특성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 소유자를 '제조자'로 추정할 수 있다....'*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을 제조하도록 다른 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은 포장재의 적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장재의 상표 표시를 포함하여 해당 포장재의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경제주체가 단순히 표준화된 포장 옵션을 선택하고 설계·생산 공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포장 제품에 한 기업의 명칭과 다른 기업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제조자'는 누구인가? [신규]

포장재에 표시된 명칭이나 상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제조자의 지위를 판단할 때 동등하게 유효하다. 따라서 한 기업이 책임 있는 식품 사업자와 같이 자체 명칭으로 제품을 제조·판매 및 유통하지만, 다른 기업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 설계를 비롯한 사양을 결정하는 기업을 제조자로 본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인 라이선스 제공자가 회원국 역내 또는 전 세계적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가 동일함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 상표로 시장 출시되는 제품이 특정 포장 설계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상표권자를 제조자로 본다. 그러나 상표가 포장재에 표시될 수는 있으나 포장재의 특성을 결정하지 않는 라이선스 제공자는 제조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누구에게 결정적인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에 명칭과 상표가 있는 두 회사 간의 계약상 합의에 기초해 사례별 평가가 필요하다.

'생산자'의 정의

8) 농업인도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목적상 생산자에 해당하는가?

농업인이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회원국 역내에서 포장재를 최초로 공급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와 관련하여 농업인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 조항은 없다.

다음은 농업인을 일반적으로 생산자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의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이다.

- 농업인이 용기(판매포장재)에 사과 몇 개를 포장하여 동일한 회원국 내의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농업인은 생산자이다.
- 농업인이 포장된 사과를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다른 회원국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령인이 사과의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만 농업인이 생산자가 된다. 이는 농업인이 다른 회원국의 소매업자에게 사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 농업인이 영세기업이고(흔히 이에 해당함) 사과 용기의 공급자가 동일한 회원국에 소재한 경우, 농업인과 공급자가 소재한 회원국에서는 해당 공급자가 생산자가 된다.
- 해당 용기가 농업인이 소속된 농업 협동조합의 명칭이나 상표로 생산되는 경우, 개별 농업인이 아닌 해당 협동조합이 생산자가 된다.
- 농업인이 대형 용기(수송포장재)에 사과를 대량으로 담아 농업 협동조합에 납품하고, 이후 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표로 사과를 용기(판매포장재)에 포장하는 경우, 해당 농업 협동조합이 생산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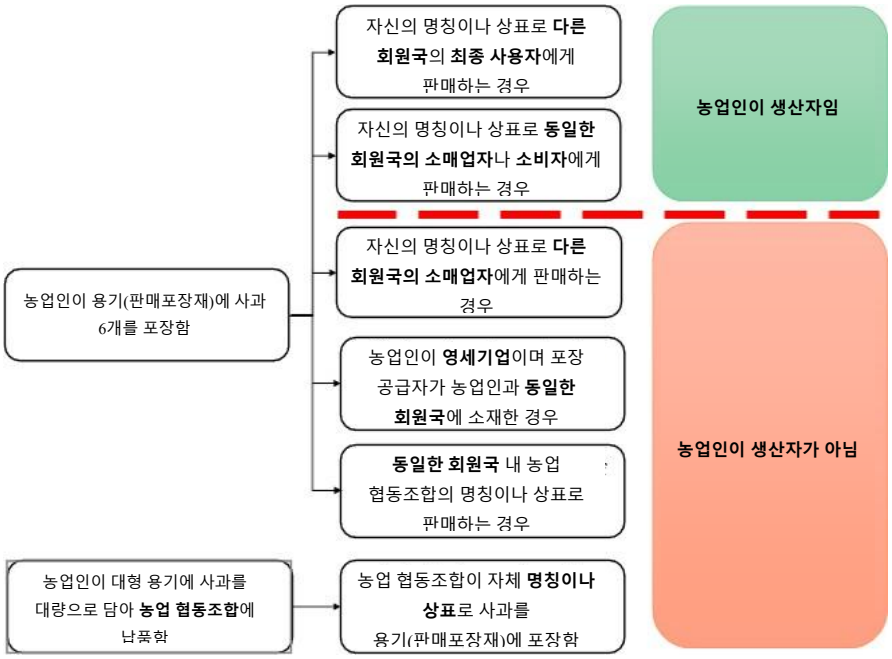

생산자의 정의는 1차 생산에 사용하는 포장재를 다룬다. *'1차 생산'*이란 *'수확, 착유 및 도축 전의 사육 동물 생산을 포함한 1차 산품의 생산, 사육 또는 재배'*([3])로 이해되어야 한다. 포장재료(예: 건초 더미에 사용하는 포일이나 끈)는 건초 더미가 시장에 출시할 때에만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따라서 포장재로 보며, 이 경우 동일한 농장에서와 같이 생산 공정에서 사용할 때에는 포장재로 보지 않는다.

9) 수송포장재의 '생산자'는 누구인가? [신규]

수송포장재의 생산자는 해당 포장재가 비어 있을 때 특정해야 한다(상단의 '수송포장재의 제조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추가 설명 참조).

다음은 수송포장재의 생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몇 가지 전형적인 예시이다.

- 기업 A는 상표가 없는 표준화된 판지 상자의 제조자이며 동일한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 B에 이를 판매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 A를 생산자로 본다. 이는 판지 상자가 납작한 상태로 판매되어 접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업 A가 다른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 C에 판지 상자를 판매하고 기업 C가 포장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해당 상자를 채우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회원국에서는 기업 C를 생산자로 본다.
- 기업 A가 판지 상자를 채워 다른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다른 회원국에서는 기업 A를 생산자로 본다.
- 기업 A가 기업 B의 명칭이나 상표로 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회원국에서는 기업 B가 해당 상자의 제조자 및 생산자가 된다. 다만 기업 B가 영세기업인 경우 해당 회원국에서는 기업 A를 제조자이자 생산자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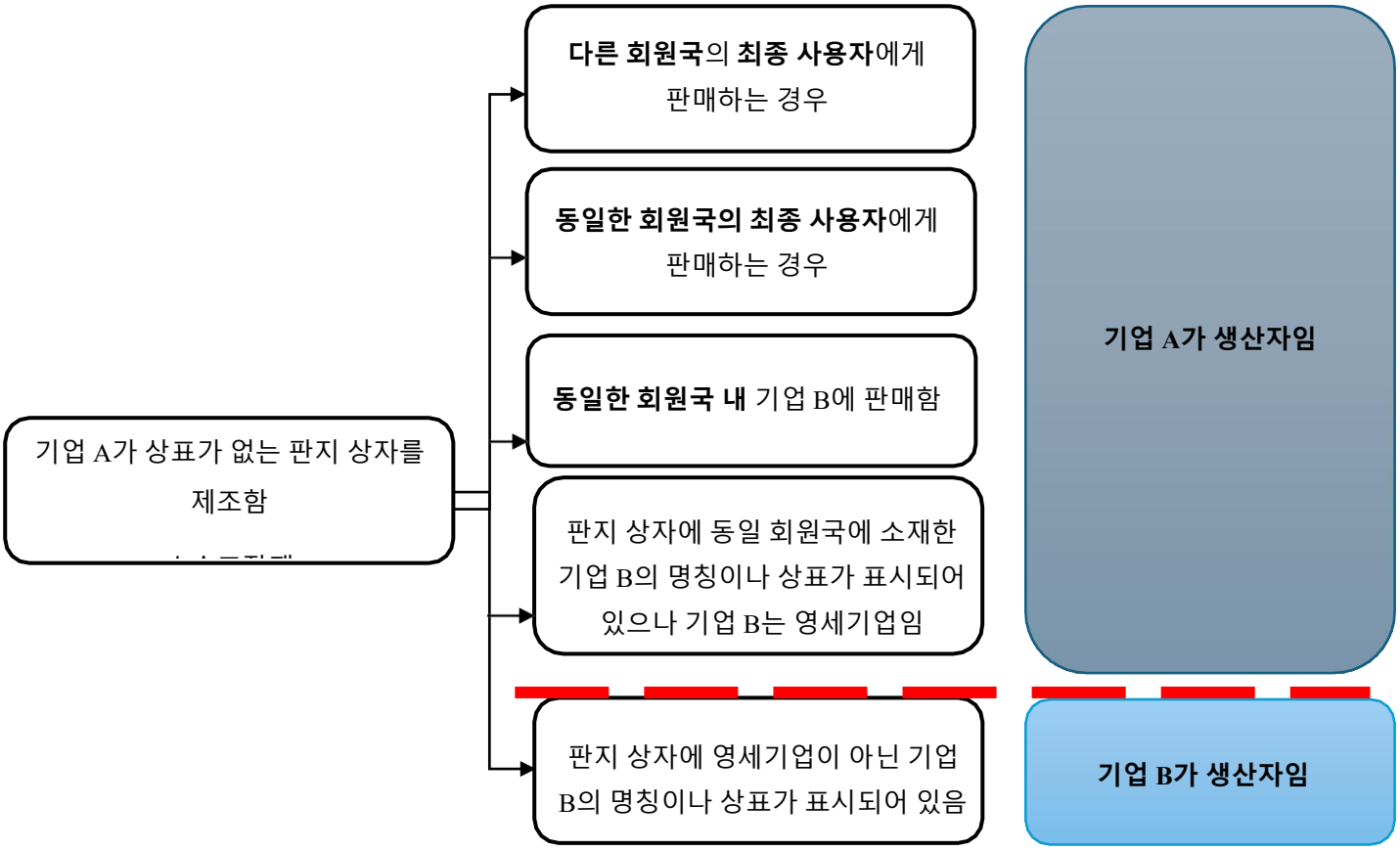

포장 생산자의 정의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화는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 제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판매포장재가 운송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 '생산자'는 누구인가? [신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판매포장재는 '매장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과 포장재로 구성된 판매 단위를 구성하도록 고안된 포장재'로 정의하는 반면, 수송포장재는 '취급 및 운송으로 인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판매 단위 또는 판매 단위 묶음의 취급 및 운송을 쉽게 하도록 고안된 포장재'로 정의한다.

따라서 정의상 수송포장재는 하나 이상의 판매 단위를 운송하는 역할을 하며 기저의 판매포장재를 대체하지 않는다. 판매포장재가 운송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장재는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포장한 제품의 일부로 유지되며 빈 수송포장재로서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장재가 운송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생산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해당 포장재는 여전히 판매포장재이다. 생산자는 해당 포장을 채우고 관련 회원국에서 포장한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제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는 포장재의 설계, 의도한 용도 및 공급망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항상 사례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 공급

11) '시장 공급'이라는 문구가 때로는 유럽연합 시장을, 때로는 회원국의 역내를 지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 공급'(제3조제1항제9호)과 '시장 출시'(제3조제1항제10호)의 정의는 유럽연합 시장을 지칭한다. 이 정의는 경제주체에게 직접 적용되는 요건의 조화를 반영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전반에 적용한다.

그러나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목표, 분리수거, 생산자책임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요건은 주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술한 요건들의 역내적 적용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이 규정은 '회원국 역내 공급'(제3조제1항제11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정의는 '시장 공급'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이며, 유일한 차이점은 해당 행위를 유럽연합 시장 대신 회원국 역내로 국한한다는 점이다.

12) 포장한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시장 공급하는지 혹은 추가로 시장 공급하는지 생산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상업 활동 과정에서 유통,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해 제품을 공급할 때 해당 제품을 *시장 공급한* 것으로 본다. 최종 사용자란 소비자이든 직업상 최종 사용자이든 **관계없이 제품을 공급받아 공급받은 형태 그대로 시장에 해당 제품을 다시 시장 공급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적인 요인은 수령인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직업상 최종 사용자가 제품을 자체 운영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동일한 형태로 시장에 다시 시장 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직업상 최종 사용자를 최종 사용자로 본다.

포장한 제품의 생산자는 포장재의 특성 및 선택한 마케팅과 유통 채널을 기반으로 의도한 수령인이 최종 사용자(소비자 또는 직업상 최종 사용자)인지 아니면 다른 회원국에서 포장한 제품을 재판매할 상업적 구매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3국에서 수입한 제품과 같이 포장된 상품을 수령하고 취급 활동(예: 포장 풀기, 재포장 또는 제품을 더 적은 수량으로 나누기)을 수행하는 **물류사업자**를 **최종 사용자로 보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장 출시

13) 최종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제조 현장 간에 제품 부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한 것으로 보아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적용하는가? [신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조제10항은 '시장 출시'란 '빈 상태이거나 제품을 채운 상태이든 관계없이 유럽연합 역내 시장에 포장재를 최초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조제9항은 '시장 공급'이란 '상업 활동 과정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유럽연합 역내에서의 유통,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해 빈 상태이거나 제품을 채운 상태인 포장재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포장재는 시장에 출시할 때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재가 아직 시장 출시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제품 부품에 대한 책임도 있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였고 어떠한 상거래 일부도 구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포장재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정 기업이 두 사업장 간에 부품을 운송하기 위해 직접 제조하지 않은 수송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장재는 시장 출시된 것으로 보므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규칙을 적용한다.

추가 명확화

14) 음료병의 크라운 코르크(crown corks)는 통합 구성요소인가 분리 구성요소인가?

유리병의 크라운 코르크는 이 규정 제3조제1항제44호에 따라 분리 구성요소로 본다. 병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지 아니한 이러한 마개는 제품에 접근하기 위해, 나아가 포장재 단위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포장재 단위의 본체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향후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fR)에 관한 위임 법령에서 통합 구성요소 및 분리 구성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다.

15) 「위험물의 내륙 운송에 관한 지침 2008/68/EC」[3]에 규정한 예외 조항은 위험물 운송에 사용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는가? 해당 적용 제외 조항은 비위험물 운송에도 적용하는가? [수정]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함량 및 재사용 목표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 운송에 사용하는 포장재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사항을 둔다. 포장재를 「지침 2008/68/EC」에 따라 위험물 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예컨대 소량위험물(LQ) 표시하에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유엔 승인(UN approval)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적용 제외 조항을 적용한다.

비위험물 운송에 사용하는 UN 승인 포장재의 경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적용한다.

[3] [2008년 9월 24일 자]「위험물의 내륙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68/EC」

III. 우려물질

1)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을 참조하는 우려물질(SoC)의 정의에서,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 제2조제27항a목, b목, c목, d목의 요건을 누적 요건으로 보아야 하는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 내 재료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문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물질을 우려물질로 보려면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4] 제2조제27항a목부터 d목까지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충분하다.

*'재사용 및 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포장의 재사용 및 재활용 용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물질을 식별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다.

2) 물질과 우려물질(So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ESPR)」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우려물질(SoC)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는가?

우려물질(SoC)의 정의는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이 규정 제3조제1항제4단락)을 인용하며, 이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과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이 우려물질을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은 우려물질을 식별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이는 주로 유해한 특성과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CLP)」[5]에 따른 분류를 기반으로 하지만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 내 재료의 재사용·재활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6]에 대한

---

[4]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 자주 묻는 질문(ESPR FAQ)」은 Circa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2008년 12월 16일 자] 「지침 67/548/EEC 및 1999/45/EC를 개정 및 폐지하고 규정(EC) 제1907/2006호를 개정하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272/2008호」*(유럽연합 관보 L 편 제353호, 2008. 12. 31., 1~1355 면)*

[6]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 제2조제27호에 따라, '우려물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a) 「규정(EC) 제1907/2006호」 제57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규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식별되는 물질

b) 「규정(EC) 제1272/2008호」 부속서 VI 제3부에 따라 다음의 유해성 등급 또는 유해성 구분 중 하나로 분류되는 물질

   a. 발암성 구분 1 및 2
   b.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 및 2
   c. 생식독성 구분 1 및 2
   d.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 구분 1 및 2
   e. 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 구분 1 및 2
   f. 잔류성·이동성·독성 또는 고잔류성·고이동성 특성
   g.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또는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특성

참조도 포함한다. 해당 요건은 누적 요건이 *아니며,* 이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물질을 우려물질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우려물질(SoC)의 추가 및 재생원료의 사용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 규정의 목적은 포장재 내 우려물질의 존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첫 번째 단계로 우려물질을 식별하고, 해당 물질이 재활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채택할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통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상 제한 조치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관련 물질의 식별은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주도하는 연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이다.

4) 우려물질(SoC)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질은 얼마나 되는가?

포장재 내 우려물질(SoC)의 확정된 수나 목록은 없다.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이 제5조제2항에 설정된 이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수행 중인 연구에서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이며, 포장재 제조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해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려물질 목록을 제공할 것이다. 우려물질을 식별하기 위해 「규정(EU) 제2024/1781호(ESPR)」 제2조제27호에 나열한 각 기준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정보 출처가 있다(예: 유럽화학물질청[7]이 관리하는 '허가 대상 고위험성 우려물질 후보 목록').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EC) 제1272/2008호」[8] 부속서 VI 또한 우려물질을 식별하는 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

5) 포장재 공급자는 우려물질(SoC)의 데이터 요건을 준수할 의무를 어떻게 지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6조는 포장재 공급자의 의무를 자세히 명시한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제조자가 포장재 및 포장재 원료가 이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조자는 포장재 내에 존재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또는 기타 우려물질을 식별하고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조의 준수를 입증하는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포장재 원료 공급자 또는

---

h.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i. 피부 과민성 구분 1
j. 수생환경 유해성(만성 구분 1~4)
k. 오존층 유해성
l.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 및 2
m.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1 및 2

c) 「규정(EU) 제2019/1021호」의 규제 대상 물질
d)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 내 재료의 재사용·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

[7]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table.

[8] [2008년 12월 16일 자] 「지침 67/548/EEC 및 1999/45/EC를 개정 및 폐지하고 규정(EC) 제1907/2006호를 개정하는,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272/2008호」(유럽연합 관보 L편 제353호, 2008. 12. 31., 1~1355면)

가공자로부터 이 정보가 필요하다.

6) 우려물질의 농도 제한은 어떤 값으로 설정하는가?

이 규정은 재료 및 배출물 내 우려물질 함량을 최소화할 의무를 포함한다. 주요 추진 원칙은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즉 수용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우려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농도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물질(예: 과불화화합물 및 특정 중금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농도 제한을 설정한다.

우려물질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은 집행위원회와 유럽화학물질청이 주도하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우려물질(SoC)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은 기존의 우려물질 정의를 기반으로 제조자가 이미 식별할 수 있다. 우려물질 기준은 주로 유해한 특성을 참조하지만, 사안에 따라 재활용 및 재사용과 관련한 고려 사항도 포함한다.

포장재 내 우려물질에 대한 새로운 농도 제한은 2033년까지 집행위원회가 수행할 평가 결과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평가는 해당 규정이 포장재 내 우려물질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는 데 충분히 기여했는지 고려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재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려물질의 존재를 제한하기 위해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임 법령을 채택할 수 있다.

7)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조제1항의 시행일은 언제인가?

이 규정과 이에 따른 우려물질 함량 최소화 의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은 이미 포장재나 그 포장폐기물 잔류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배출물, 재 또는 침출수에 존재하는 우려물질을 최소화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에 대한 구체적인 농도 제한을 설정한 바 있다.

8) 제조자는 포장재 내 우려물질을 최소화할 의무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의 준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신규]

제5조제1항에 설정된 일반 원칙은 기존 조화표준인 EN 13428:2004 '포장재(제조 및 구성 관련 특정 요구 사항·원천 감축을 통한 예방)' 부속서 C(위험 물질 또는 조제품의 최소화 및 적합성 입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부속서는 특정 포장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경제주체가 포장 최소화를 결정하고 입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설명한다.

9) 우려물질과 관련한 요건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화표준 EN 13428:2004를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가? [수정]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우려물질과 관련한 이러한 요건들을 강화했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따라, 재료 자체뿐만 아니라 배출물 또는 폐기물 결과물에서도 '*우려물질의 존재 및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포장재를 제조해야 한다. 또한 이는 단순히 수명 종료 후 폐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재사용, 재활용 및 화학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요건들을 명시적으로 연계한다. EN 13428:2004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조에서 요구하는 전체 수명주기 영향이 아닌, 배출 및 폐기 시 위험 물질을 최소화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둔다. 또한, 이 표준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고위험성 우려물질,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 유해성 등급 및 재활용성 영향을 포괄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확대된 유해성 범위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 물질 또는 조제품의 최소화 및 적합성 입증*'과 관련한 기존 조화표준 EN 13428:2004[9] 부속서 C는 우려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적합성 추정을 발생시킬 수 없다. 그러나 갱신된 조화표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존 표준인 EN 13428:2004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제조자는 포장재 내 중금속 한곗값에 관한 제5조제4항의 준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신규]

이는 새로운 의무가 아니다. 제조자는 폐지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10] 제11조에 따라 이미 이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유럽표준화위원회(CEN) 보고서 CR 13695 1/2000 '*포장재(포장재 내 존재하는 4대 중금속 및 기타 위험 물질과 그 환경 방출의 측정 및 검증 요구 사항 제1부: 포장재 내 존재하는 4대 중금속 측정 및 검증 요구 사항)*'의 사용을 권장한다.

11) 포장재에 우려물질(SoC) 함유를 최소화할 의무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적용하는가?

이 의무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정의(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한다.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영세기업인 경우 공급자는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12) 비식품 접촉 민감성 포장재에 대한 우려물질(SoC) 최소화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제5조제1항의 우려물질 최소화 일반 의무와 제5조제4항의 4대 중금속 한곗값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포장재에 적용한다. 제5조제5항에서 설정한 과불화화합물 한계설정치는 식품접촉물질에만 적용한다.

13) 회원국은 우려물질로 간주하는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회원국이 새로운 우려물질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알리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2026년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회원국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려물질에 관한 관련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해당 조사를 수행할 때 이 정보를 고려한다. 우려물질 모니터링은 집행위원회의 영구적인 임무이다.

14) 포장 및 포장폐기물 내 중금속 농도 수준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 「결정 2001/171/EC」[11]가 도입한 유리 포장재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가?

---

[9] [1994년 12월 20일 자]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의 이행 체계에 따른 집행위원회 통신문에 공표된 조화표준*(유럽연합 관보 C편 제44호, 2005. 2. 19.)*, EN 13428:2004 '포장재·제조 및 구성 특화 요구 사항·원천 감축을 통한 방지'

[10] [1994년 12월 20일 자]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

[11] [2001년 2월 19일 자]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 94/62/EC에서 확립한 중금속 농도 수준과 관련하여 유리 포장재에 대한 적용 제외 조건을 확립하는 집행위원회 결정」*(유럽연합 관보 L편*

집행위원회 결정 2001/171/EC를 계속 적용하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이를 폐지하지 않았다. 이는 재활용 유리를 첨가하여 한곗값을 초과하는 경우, 포장재가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합계에 대해 중량 기준 100 ppm의 농도 한곗값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공정 중에는 어떠한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도 의도적으로 투입할 수 없다. 집행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서 확립한 한곗값을 수정하기 위해 위임 법령을 채택할 수 있으나, 이는 허용하는 농도 수준의 합계를 낮추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규정한 중금속 제한의 적용일을 연장할 권한이 없다.

15)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규정(EC) 제1935/2004호」[12],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규정(EU) 제10/2011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EU) 제2019/1021호」 및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과불화화합물 금지를 참조하여 수정하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과불화화합물 금지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농도 한곗값을 설정한다. 또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과불화화합물 한곗값을 다른 '수직적' EU 법령에 그대로 인계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집행위원회는 제5조제5항을 근거로, 식품접촉물질(FCM)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 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규정에 따른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또는 금지와의 중복을 식별하는 경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내 과불화화합물 제한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을 평가한다.

16) 제5조제5항의 과불화화합물 제한은 의도적으로 첨가한 과불화화합물과 의도치 않게 존재하는 과불화화합물 모두에 적용하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채택한 과불화화합물 제한은 의도적으로 첨가한 과불화화합물과 의도치 않게 존재하는 과불화화합물을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5조제5항의 규정은 양쪽 모두에 적용한다. 참고로, 다수의 선택된 포장재[13]에 대한 예비 과불화화합물 실험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과불화화합물을 첨가한 포장재만이 과불화화합물 한곗값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17) 해당 제한은 포장재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에만 적용하는가, 아니면 재료 및 이와 관련한 잉크·바니시·풀·접착제에도 적용하는가?

해당 한곗값은 제조자가 시장에 출시하는 관련 잉크·바니시·풀·접착제를 포함하여 포장 단위 전체에 적용한다. 제조자는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기술 문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 참조).

제62호, 2001. 3. 2., 20~21 면)

[12] [2011년 1월 14일 자]「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규정(EU) 제10/2011호」(유럽연합 관보 L편 제012호, 2011. 1. 15.)

[13] Skedung L.1 및 Bjarnemark F.1: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과 새롭게 등장하는 보편적 제한에 따른 과불화화합물 적합성 시험을 위한 조화된 작업 흐름 식품 접촉 포장재 사례 연구 1스웨덴 국립연구소(RISE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18)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과불화화합물 목록(식별을 위한 CAS 번호 포함)을 게시하는가?

이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과불화화합물 목록은 게시하지 않는다. 해당 한곗값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명시된 정의에 해당하며 포장재에 함유하거나 포장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과불화화합물에 적용한다.

19) 유럽연합 수준에서 식품 접촉 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조화된 방법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불화화합물 한곗값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행위원회는 과불화화합물 한곗값 집행을 위해 국가 시장 감시 당국의 조화된 접근 방식을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식품 접촉 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조화된 시험 프로토콜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이해관계자, 시민 사회 단체 및 회원국 관할 당국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작업 흐름은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국가 기준 연구소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식품접촉물질 유럽연합표준연구소(EURL)와의 협력을 포함한다.

20) 과불화화합물 한곗값 집행의 출발점이 총 불소 분석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연구소에서 이러한 시험 방법론을 제공하는가?

총 불소·총 유기 불소 분석을 제공하는 상업 및 대학 연구소가 이미 많이 존재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과불화화합물 한곗값을 고려할 때, 다른 많은 상업 및 공인 연구소가 시험 역량에 투자하고 기존에 이를 수행하던 연구소는 역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21)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부속서 I의 '다양한 종류의 가스에 사용하는 재충전 가능한 강철 실린더'는 중금속 한곗값을 100 mg/kg으로 설정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조제4항을 준수해야 하는가? [신규]

재충전 가능한 실린더를 이용한 가스 운송은 구속력 있는 유럽연합 법률로서 국제도로위험물운송규약(ADR)[14]을 직접 이행하는 「지침 2008/68/EC」[15]를 준수해야 한다. 국제도로위험물운송규약(ADR)은 누출 방지(가스 밀폐) 압력 용기를 요구하며, 표준을 통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조제4항에 명시된 농도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납을 함유한 구리·아연·납 합금 사용을 규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도로위험물운송규약(ADR)이 의무화한 안전 구성요소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남기지 않는 경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조제4항의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과 「지침 2008/68/EC」가 상충할 경우 후자가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것이다.

[14] 국제도로위험물운송규약(ADR 2025)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15] [2008년 9월 24일 자]「내륙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68/EC」

IV. 재활용 용이성

1) 재활용 용이성 성능 등급 평가와 관련

- **포장 단위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 **통합형 구성요소와 분리형 구성요소의 차이는 무엇인가?**
- **포장 단위의 본체는 무엇인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조제1항제45호에 따라 '포장 단위(unit of packaging)'란 제품의 수용, 보호, 취급, 배달, 보관, 운송 또는 제공과 같이 전체적으로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통합형 또는 분리형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포장 단위는 판매 시점 이전에 폐기되는 묶음포장재 또는 수송포장재 단위와 독립적이다. '포장 단위(unit of packaging)'라는 용어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함께 사용하는 '포장 단위(packaging unit)'와 동일하게 본다. 통합형 구성요소와 분리형 구성요소 역시 규정 제3조제1항제43호 및 제44호에 각각 명시한다.

포장 단위의 예시로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플라스틱 케첩 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케첩 병은 플라스틱병, 소비자가 제품에 접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탈착식 뚜껑(예: 벗겨내는 호일), 라벨 및 마개 장치와 같은 포장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케첩에 접근하기 위해 소비자가 탈착식 뚜껑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경우, 이를 분리형 구성요소로 본다. 마개 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케첩 병과 함께 폐기한다. 케첩 병의 마개 장치를 소비자가 분리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이를 통합형 구성요소로 본다. 라벨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병에 부착되어 케첩 병과 함께 폐기한다. 따라서 이는 통합형 구성요소로 간주하며, 이 맥락에서 플라스틱병 자체는 포장 단위의 본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연성 포장재의 마개를 제외하고 중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 부위를 포장 단위의 본체로 본다.

제6조제9항에 따라, *"포장 단위에 통합형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기준 및 대규모 재활용 요구 사항 준수 평가 시 모든 통합형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운송 또는 분류 중의 기계적 스트레스 결과로 서로 분리될 수 있는 통합형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수행한다."고 명시한다.*

2) 시장에 특정 포장재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한 재활용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 해당 포장재 또는 그 구성요소는 제6조에 따라 면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재활용 용이성 의무로부터의 면제 조항은 제6조제11항에 명시한다. 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면제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혁신적인 포장재의 경우, 회원국 관할 당국의 주의를 환기한 대로 집행위원회는 관할 당국의 요청을 평가하고 제6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위임법령을 갱신하거나 채택해야 한다. 혁신적인 포장재란 *'제품의 제공 및 마케팅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기존 포장재를 수정한 결과인 포장재를 제외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함으로써 제품의 수용·보호·취급 또는 배달과 같은 포장재 기능의 상당한 개선과 전반적이고 입증 가능한 환경적 이점을 가져오는 포장재'*를 말한다(제3조제1항제46호).

집행위원회는 제6조제11항에 포함된 적용 제외 조항 및 제6조제10항에 포함된 혁신적인 포장재 관련 적용 제외 조항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포장재 또는 그 구성요소가 제6조제11항에 규정된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혁신적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조자는 2030년 또는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요구 사항을 명시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 입법의 발효 후 2년 중 늦은 시점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지침을 준수하도록 포장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 재활용 불가능한 통합형 구성요소는 포장 단위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낮추거나 심지어 전체 포장 단위의 규정 준수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3) 적용 제외 조항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며 이를 완료하기 위한 예상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집행위원회는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용하는가?

해당 절차는 제6조제10항에 규정한다. 회원국은 해당 규정에 요약된 규칙을 존중하면서 자국 법률에 절차를 이행할 재량권을 누린다.

해당 기준은 제3조제1항제46호에 요약되어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지침을 채택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지 않다. 재활용 용이성 요구 사항으로부터의 해당 면제 조항을 사용하는 제조자는 기술 문서에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4) 회원국은 자체적인 에코 모듈레이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제6조제4항d목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생산자가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성능 등급 기반의 재정 분담금 차등화 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통일된 체계는 규제 파편화를 방지하고 특히 여러 회원국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경제주체에 법적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유럽연합 내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욱 지속가능한 포장 설계를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용이성 성능에 기반한 국가별로 상이한 에코 모듈레이션 제도가 무역 장벽을 형성하고 단일 시장 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

조화된 체계는 해당 분담금의 실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대신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통해 얻은 재활용 용이성 성능 등급에 기반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조정을 위한 기준을 조화한다. 조화된 에코 모듈레이션 규칙이 발효하기 전까지, 회원국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에 따라 채택한 자국 규정에 의거하여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국은 해당 조치가 단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의 에코 모듈레이션 조치가 기술 규정이나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규정정보시스템(TRIS)을 통해 「지침(EU) 2015/1535」[16] 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성능 등급에 기반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차등화(에코 모듈레이션)에 대한 조화된 체계를 확립할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에 관한 위임 법령 발효 이후, 회원국은 이 조화된 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에코 모듈레이션 규칙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회원국은 재생원료 함량, 우려물질 포함 여부, 포장재 재사용 가능성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생산자의 재정 분담금을 계속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회원국이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 존재를 기반으로 에코 모듈레이션 도입을 결정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16] [2022년 12월 14일 자]「규정(EU) 제910/2014호」 및「지침(EU) 제2018/1972호」를 개정하고,「지침(EU) 제2016/1148」을 폐지하는 유럽연합 전역의 공통적인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22/2555호」(유럽연합 관보 L편 제333호, 2022. 12. 27.)

제7조제9항에 따라 2026년 말까지 개발할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과 환경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5) 회원국이 재활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재활용 용이성 '대규모(at scale)' 평가 시 이를 고려하도록 예상하는 메커니즘이 있는가?

'대규모' 평가는 부속서 II의 표 2에 나열한 포장재 카테고리당 유럽연합 수준에서 달성할 55%[17]의 재활용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기술적 및 과학적 발전에 적응시키기 위해 이러한 카테고리 목록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 '대규모'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 달성한 재활용률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므로 특정 회원국이 특정 재활용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대규모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유럽연합 수준의 전반적인 재활용률과 2차 원료의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수거·분류 및 재활용 체계를 최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규정은 보증금반환제도 구축 의무, 조화된 폐기물 분류 표식의 의무화, 회원국의 의무 수거 목표 설정 의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의 매립 및 소각 금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규정한다. 이러한 요건을 이행하면 유럽연합 차원의 전반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경제주체가 '대규모' 재활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6) 유아용 식품에 대한 제6조제11항e목에 따른 면제 범위는 무엇인가?

「규정(EU) 제609/2013호」[18] 에 명시된 영유아 식품에 대한 면제 조항은 해당 규정 제2조제2항f목의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면제 조항이 영유아 소비용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과일 주스, 퓌레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7) 대규모 재활용 용이성 평가는 발생처, 부문 또는 유형과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포장폐기물을 기반으로 하는가?

'대규모' 재활용 용이성 평가 및 이와 관련한 모든 포장재 원료에 대한 55% 재활용 목표와 목재에 대한 30% 재활용 목표는 발생처(가정, 상업 및 산업 폐기물), 부문 또는 유형과 관계없이 EU 역내에서 발생하고 재활용되는 모든 포장폐기물을 의미한다. 재활용률 산정은 개정된 집행위원회 「결정 제2005/270호」에 명시된 기존 재활용률 산정 규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6조제7항에 따른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된다.

8) 제6조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구 사항이 발효되기 전에 EU 역내 시장에 출시된 재사용 가능한 판매포장재 및 수송포장재에 적용하는가?

전문(14)는 *'포장재는 이 규정에 명시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명시된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 및 표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u>시장에 출시</u>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강조 추가됨). 재고 포장재를 포함하여 관련 요구 사항의 적용일 이전에 이미 EU 역내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17] 30%인 목재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에 해당한다.

[18] [2013년 6월 12일 자]「이사회 지침 92/52/EEC」,「집행위원회 지침 96/8/EC」,「집행위원회 지침 1999/21/EC」,「집행위원회 지침 2006/125/EC」 및「집행위원회 지침 2006/141/EC」,「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39/EC」,「집행위원회 규정(EC) 제41/2009호」 및「집행위원회 규정(EC) 제953/2009호」를 폐지하는 영유아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및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609/2013호」(유럽연합 관보 L편 제181호, 2013. 6. 29., 35~56면)

이 규정에 명시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명시된 지속가능성 및 표시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회수할 필요도 없다.

제6조제2항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채택된 위임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후에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가 해당 법령에 명시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원칙에 따라 재활용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의무는 재사용 가능 여부, 1회용 여부, 판매포장재, 묶음포장재 또는 수송포장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포장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임 법령이 2028년 1월 1일까지 채택되어야 하므로, 제조자가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또는 수송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지할 수 있다. 시장 출시란 포장 설계가 아닌 개별 포장 단위 각각을 말한다.

9) 코르크, 경량 목재, 섬유, 세라믹, 고무, 도자기 및 왁스로 만들어진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요구 사항 면제 조항은 2035년까지 유효한가?

제6조제1항은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제6조제11항은 특정 포장 원료 및 부문에 대하여 이 요구 사항에 관한 면제 조항을 확립한다. 집행위원회는 2035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면제 조항을 검토하여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 또는 삭제를 제안할 수 있다.

코르크, 경량 목재, 섬유, 세라믹, 고무, 도자기 및 왁스로 만들어진 포장재에 관한 예외 조항은 판매포장재에만 적용하며, 이는 해당 포장재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지 결정할 목적으로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활용 용이성 성능을 기반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판매포장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이러한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는 오직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조정을 결정할 목적으로만 수행한다.

V.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

1) 재생원료 함량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재생원료 함량 목표 준수는 부속서 V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포장재에 대한 기술 문서에서 입증해야 한다. 재생원료 함량 요구 사항의 준수는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경제주체가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벗길 수 있는 덮개가 있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시장에 출시한다. 이 경우, PET 트레이와 PP 덮개를 유럽연합 역내의 서로 다른 제조 공장에서 생산하여, 해당 포장 구성요소를 뚜껑이 있는 트레이로 조립하고 제품을 채워 최종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주체에 공급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트레이와 덮개를 각각 제조하는 두 제조 공장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사 구성요소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요구 사항 준수에 관한 정보를 각각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제조 공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덮개가 있는 트레이를 최종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주체(즉, 제조자)는 재생원료 함량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일한 원칙은 중간 플라스틱 포장 구성요소, 빈 플라스틱 포장재 또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내용물이 채워진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제주체는 또한 재생원료 함량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각각 제7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이행 법령에 명시될 지속가능성 및 동등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 맥락에서 *'제조 공장 및 연도별 평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조 공장은 포장재를 생산하는 산업 시설로 이해해야 한다. 연도별 평균은 특정 제조 공장에서 각 제조자를 위해 1역년 동안 생산한 플라스틱 포장재 유형 및 형식별 재생원료(재생원료 함량)의 양을 말한다. 제조 공장은 특정 제조자에게 연간 공급하는 평균 물량이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조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조 공장에서 여러 포장 형식을 생산하므로 각 포장재 유형 및 형식에 대한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산정해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채택할 이행 법령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을 산정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한다.

3) 접착제, 페인트 및 잉크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 요구 사항에 포함되는가?

접착제, 페인트 및 잉크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상 플라스틱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재생원료 함량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해당 물질이 포장 단위의 5% 미만을 차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4)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에 대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허용하는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해당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재생원료 함량에 대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허용한다.

제14조는 경제주체가 포장 단위, 재생원료 함량이 포함된 포장 단위의 일부, 또는 경제주체가

1 역년 동안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는 아래 표에 예시되어 있다.

예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재생원료 함량 요건**	환경 관련 표시·광고 대상	**허용하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PP로 만든 마개 장치가 있는 PET 플라스틱병	페트병: 30% PP 마개: 10%	포장 단위(병 및 마개 장치)	페트병의 재생원료 함량이 30%를 초과하거나 PP 마개 장치의 재생원료 함량이 10%를 초과함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선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 준수는 기술 문서에서 입증해야 한다.

5) 경제주체는 어떤 재생원료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수정]

재생원료 함량 요건은 판매포장재, 묶음포장재 및 수송포장재의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적용한다.

첫째, 경제주체는 포장재가 접촉 민감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경제주체는 포장재가 어떤 폴리머로 만들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는 충족해야 할 재생원료 함량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다음 표에 예시한다.

	포장재 형식	**1단계: 포장재가 접촉 민감성인가?**	**2단계: 폴리머를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가?**	**2030년 적용 목표**
예시 A	상품 수송용 팔레트 포장 필름	비접촉 민감성	PET 이외의 물질	제7조제1항d목, 35%
예시 B	음료 카톤	접촉 민감성	PET 이외의 물질	제7조제1항b목, 10%
예시 C	1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접촉 민감성	PET	제7조제1항c목, 30%

6) 재생원료 함량에 대한 요구 사항은 2030년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에 적용하는가?

재생원료 함량 요건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제7조제8항에 따른 이행 법령 발효 후 3년 중 가장 늦은 날짜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기한 이전에 제조자에게

공급되었으나 제조자가 아직 시장에 출시하지 않은 포장재에 대한 재고 소진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7) 유리병의 플라스틱 뚜껑과 라벨도 재생원료 함량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가? [수정]

제7조제5항b목은 포장 단위 총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부품을 재생원료 함량 요건에서 면제한다. 이 면제 조항은 플라스틱 부품에만 독점적으로 적용하며 비플라스틱 재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속 뚜껑과 플라스틱 라벨이 있는 유리병의 경우, 금속 뚜껑은 플라스틱 부품이 아니므로 재생원료 함량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라벨은 그 중량이 포장 단위, 즉 뚜껑과 라벨이 있는 병 총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에 면제 조항을 포함한다.

8) 플라스틱 뚜껑의 재활용 플라스틱은 우유의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지만 영아용 조제식 포장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제품에 동일한 뚜껑을 사용하는 경제주체가 우유 포장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가?

2030년부터 제조자는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의 플라스틱 부분이 제7조제1항의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유는 재생원료 함량 요건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제조자는 우유 포장재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뚜껑이 재생원료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 즉석 영유아 조제식용 플라스틱 뚜껑은 제7조제4항g목에 명시된 면제 조항으로 인하여 재생원료 함량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9) 제7조의 면제 조항에서 사용한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재*'와 '*직접 포장재*'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직접 포장재'란 '(...)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19]를 의미하는 반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조제1항제49호에 따르면 접촉 민감성 포장재란 식품 및 의약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장재를 말한다.

의료기기 및 기타 의약품의 맥락에서 '직접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조제1항제49호에 따른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재'의 자격을 가지며, 개념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7조의 이행을 목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10)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및 「1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따른 재생원료 함량 관련 보고 의무 간의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1회용 플라스틱 지침」 제6조제5항a목 및 b목(즉, 「1회용 플라스틱 지침」 부속서 F부에 나열한 음료병의 재생원료 함량 목표)과 관련 회원국 보고에 관한 「1회용 플라스틱 지침」 제13조제1항e목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제7조제8항에 언급된 재생원료 함량 산정에 관한 이행 법령 발효 후 3년 중 더 늦은 날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과 「1회용 플라스틱 지침」 사이에는 고려해야 할 범위의 차이가 일부 존재한다:

- 「1회용 플라스틱 지침」에서 목표는 회원국 수준인 반면, 「포장 및 포장폐기물

[19] [2001년 11월 6일 자]「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공동체 법전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83/EC」(유럽연합 관보 L편 제311호, 2001. 11. 28., 67면)

규정」은 포장재 유형/형식별로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제조 공장 및 연도별 평균으로 산정한다.

- 「1회용 플라스틱 지침」에는 복합재료에 대한 최소 임곗값이 없는 반면,「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플라스틱 부품이 포장 단위 중량의 5%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면제 조항을 포함한다.
- 「1회용 플라스틱 지침」에는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관한 면제 조항이 없다.

11) 수입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재생원료 함량 요건

「규정(EU) 제2022/1616호」 및 해당 조항(특히 제6조)은 수입 포장재를 포함하여 EU 역내 시장에 출시된 식품접촉물질용 모든 재활용 플라스틱에 적용한다.

따라서 식품 접촉 포장재를 포함하여 이 원료를 식품접촉물질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재생원료 함량이 포함된 플라스틱 원료의 수입자는 이러한 원료가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래 요약된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원료는 식품 접촉 포장재를 포함하여 식품 접촉 적용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규정 제6조는 다음 사항을 의무화한다.

-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수거
-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별에서 재활용까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 제6조에 따른 전처리 활동의 제3자 인증을 획득한 증명서
- 재생원료가 「규정(EU) 제10/2011호」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증거

VI. 퇴비화 가능성

1) 제9조제1항은 특정 포장재 유형에 대하여 퇴비화 가능성 요구 사항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포장재 유형은 2028년 2월 12일 이전에도 바이오 폐기물 흐름에 허용되는가?

실제로 이 규정은 사용 후 비워지지 않은 차 및 커피 백을 포함하도록 포장재의 정의를 변경했다. 이러한 신규 포장 항목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즉 2026년 8월 12일에 포장재로 분류된다.

퇴비화 가능성에 관한 제9조는 2028년 2월 12일부터 적용하므로, 회원국은 해당 날짜 이전에는 바이오 폐기물 흐름에서 이러한 포장재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나* 수용하도록 권장한다.

2) 제조자는 모든 산업용 퇴비화 시설이 'EN 13432:2000'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모든 회원국의 폐기물 관리 운영자는 조화표준 'EN 13432:2000'에 따라 인증된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를 수용해야 하는가?

규정에는 퇴비화 시설이 조화표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집행위원회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제9조제2항은 의무적으로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의 국가 목록에 추가 포장 항목을 더할 수 있는 회원국의 유연성을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가 바이오 폐기물 관리 흐름에 진입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폐기물 수거 계획 및 폐기물 관리 인프라'*의 존재 여부에 조건부로 허용한다. 집행위원회는 산업용 퇴비화를 대표하는 협회가 수정된 산업용 퇴비화 가능성 표준 개발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3) 현재 제품이 퇴비화 가능하고 시장에 유통 중인 경우, 경제주체는 규정이 발효되고 적용된 이후에도 이를 시장에 계속 공급할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이며, 경제주체가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회원국의 영토 내에 특정 포장 형식이 퇴비화 가능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요구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의 제8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회원국은 2026년 8월 12일까지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a목에 나열한 항목 외의 추가 포장 형식이 자국 영토 내에서 퇴비화 가능해야 한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VII. 포장 최소화

1) 포장 최소화에 관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2030년 1월 1일까지 적용하는가?

그렇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2030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 2029년 말까지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의 필수 요구 사항이 계속 적용하며, 따라서 기존 표준 'EN 2004:13428'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는 규정 제70조제1항b목에서 기인한다.

2) 제10조제2항의 '제품의 인지된 부피를 증가시키는'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품의 인지된 부피가 증가할 때 이중벽 또는 이중 바닥과 같은 특정 포장재 특성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예시를 제시한다.

예시	포장 최소화	제품의 인지된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선택
페이셜 크림용 플라스틱 또는 유리 재질의 50 mL 용기	내부 제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 부피로 축소된 플라스틱 또는 유리 용기	크림의 내용물이 50 mL를 초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중벽 또는 이중 바닥의 사용 크림의 내용물이 50 mL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용기 주변의 판지 상자 사용

또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입법 제안을 뒷받침한 영향 평가는 '제품의 인지된 부피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설명한다[20].

전반적으로 경제주체는 이중벽, 이중 바닥, 전면 플랩 및 추가 층이 달리 포장재 기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및/또는 이러한 구성요소가 포장재에 합당한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사용됨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시험을 통해 증명해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문서에서 입증해야 한다.

3) 가장 일반적인 포장 유형 및 형식 이외의 포장 최소화 요건은 어떻게 집행하는가?

집행위원회는 2027년 2월 12일까지 유럽 표준화 기구에 최소화 요건 준수 여부를 산정 및 측정하는 방법론을 규정하는 조화표준을 적절히 준비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 표준은 이 규정 부속서 IV에 명시된 변경된 성능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표준 'EN 13428:2004'의 수정본이 되며, 모든 포장재에 대한 최소화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방법론을 규정한다. 일단 채택되면 경제주체는 개정된 표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화 요건에 대한 적합성 추정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포장재 유형 및 형식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유럽 표준화 기구에 최대 적절 중량 및 부피 한도와 적절한 경우 벽 두께 및 최대 빈 공간을 명시하는 표준을 준비하도록

[20]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의 필수 요건 강화 및 포장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기타 조치 강화 옵션에 대한 평가 - 유럽연합 출판국, 26면: 크기, 중량 및 부피가 동일한 포장 형식을 서로 다른 수량의 동일한 나사 포장에 사용한다. 첫 번째 경우에는 포장재에 100개의 나사가 들어가는 반면, 두 번째 경우에는 동일한 포장재에 같은 크기의 나사 20개가 포함된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즉, 나사 20개 포장)는 팩의 부피와 중량 측면 모두에서 과대포장으로 본다.

요청한다.

4) 제10조제3항에 언급된 '가장 일반적인 포장재 유형 및 형식'은 무엇인가?

집행위원회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다가오는 표준화 요청에서 '가장 일반적인 포장재 유형 및 형식'을 식별한다.

이러한 유형 및 형식은 산업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식별하며, 포장재 기능, 포장재 원료 및 모양, 그리고 포장한 제품을 설명하는 세부 수준에서 시장에 출시된 단위 측면의 가용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최소화 가능성 역시 표준화 요청 구성 시 고려한다.

5) 최소화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는 포장재는 무엇인가?

다음 포장재는 최소화 요구 사항에서 제외한다(제10조제2항).

「와인에 관한 규정(EU) 제1308/2013호」, 「증류주에 관한 규정(EU) 제2019/787호」, 「수공예품 및 산업 제품에 관한 규정(EU) 제2023/2411호」에 따라 유럽연합 법령의 보호를 받는 지리적 표시 혜택을 받거나 「규정(EU) 제2024/1143호」에 언급된 품질 체계의 적용을 받는 포장한 제품 또는 음료

포장 디자인이 「이사회 규정(EC) 제6/2002호」([64])에 따른 공동체 디자인 또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 협약을 포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1/EC」([65])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3AL_202500040&ntr65-L_202500040EN.000101-E0065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해당 면제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포장 디자인이 [2025년 2월 11일 자] 이전에 보호받아야 하며, 최소화 요구 사항의 적용이 포장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포장 디자인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포장 모양이 회원국 중 한 곳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 협약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포함하여 「규정(EU) 제2017/1001호」 ([66]) 또는 「지침(EU) 제2015/2436호」 ([67]), 의 범위에 속하는 상표인 경우 이 면제 조항을 적용하려면 상표가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보호받아야 하며, 최소화 요건의 적용이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다른 기업의 제품과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포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경제주체가 이러한 면제 조항을 사용하려는 경우, 기술 문서에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라이선스 번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다른 조건의 존재와 평가 결과도 입증해야 한다.

6) 포장 '모양'이 포장 최소화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째, 경제주체는 자사의 포장재가 보호되는 상표인 모양과 관련한 제10조제2항a목의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소화 요건 면제를 위해 해당 규정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해당 조건의 검증은 경제주체가 입증해야 한다.

포장이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제주체는 집행위원회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청할 포장 최소화 평가 방법론에 관한 최신 조화표준을 적용한다. 이 최신 조화표준은 방법론에서 포장 모양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안전 취급 설계, 어린이 보호 포장, 개봉 흔적 표시, 도난 방지, 위조 방지, 위험 경고, 또는 특정 제품 특성과 같은 포장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모양이 필수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7)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최소화 요건과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의 최소화 요건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일반 원칙에 따르면,「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에 따른 법령은 다른 수단을 통해 제품의 환경 지속가능성 측면이 완전히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룰 수 없는 경우에만 제품 규제의 주도권을 갖는다. 이 원칙은 포장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 전문 제25조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은 특정 제품의 포장에 초점을 맞춘 제품별 요건을 설정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규정(ESPR)」은 포장재라는 제품군에 대한 일반적인 친환경설계 또는 지속가능성 요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VIII. 표시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의 표시 요건은 개별 포장재 단위로 적용하는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는 최소 회전수(순환 횟수)를 보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택할 위임 법령으로 규정한다. 재사용 가능한 수송포장재의 회전수 산정 및 보고 의무는 재사용 체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즉,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재사용 체계는 이 의무와 재사용 표시 및 QR 코드 표시 의무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폐쇄형 순환 체계 내에서 순환하는 재사용 가능 수송포장재에는 개별 포장재를 추적하고 회전 횟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사용 표시 및 QR 코드 또는 그 밖의 표준화된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 매체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에게 포장재가 재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표시를 포함한 세부 규칙은 제12조제6항에 따라 채택할 이행 법령에서 명확히 한다. 이 법령은 또한 개별 QR 코드 및 회전 추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평균 추정치를 기반으로 회전 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한다.

2) 어떤 상황에서 표시, 상표, 기호 또는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가?

표식, 기호, 표시 또는 문구는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함량, 재사용 가능성, 퇴비화 가능성, 바이오 기반 원료, 유해 물질 함량 또는 폐기물 관리 방안과 같은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제12조제8항).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에 관한 지침(EU) 제2024/825호」[21]를 참조해야 한다.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다른 상황이었다면 내리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수입한 포장재에 국가별 보증금반환제도 표시를 부착해야 하는가?

의무 보증금반환제도에 해당하는 포장의 표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조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품은 시장에 출시하는 회원국의 보증금반환제도 표시를 준수해야 한다. 회원국은 제12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포장에 '*조화된 색상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적 수입의 맥락, 즉 최종 사용자가 상업적 목적 없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이는 시장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서 부착한 보증금반환제도 표시의 부착을 금지할 수 없다.

4) 제1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표시 요건으로 식별해야 하는 우려물질은 무엇인가?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포장재의 재사용성 및 재활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장재 내 우려물질(SoC)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표기를 통해 우려물질을 표시하는 방법론을 규정하는 이행 법령을 제정한다.

---

[21] [2024년 2월 28일 자]「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정보 개선을 통해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지침 2005/29/EC」및「지침 2011/83/EU」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24/825」(유럽연합 관보 L편, 제2024/825호, 2024. 3. 6.)

IX. 환경 관련 표시·광고

1) 기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특성과 동등한 특성에 대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가?

제14조는 *'이 규정에 법적 요건이 규정된 특성'*에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 용이성, 퇴비화 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재사용 가능성, 중량 및 부피 최소화와 관련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및 지속가능성 라벨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조자는 이러한 표시·광고가 제14조를 준수하는지, 즉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정한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표시·광고가 포장 단위 전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지 명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속가능성 요건(예: 알루미늄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과 관련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의 경우, 기존의 유럽연합 환경 관련 표시·광고 규칙, 특히 「불공정 상업 관행 지침(2005/29/EC)」 및 「소비자 권리 지침(2011/83/EU)」을 개정하는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에 관한 지침(EU) 제2024/825호」를 준수해야 한다. 「불공정 상업 관행 지침」과 다른 법령 간의 관계에 관한 추가 정보는 해당 해석[22]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 특히 다른 유럽연합 법령과의 관계를 다룬 제1.2.1절과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다른 유럽연합 법령과의 상호작용을 다룬 제4.1.1.1절을 참조해야 하며, 해당 지침에는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법*(예: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일반법*(불공정 상업 관행 지침)에 우선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2) 제조자가 포장 단위의 재생원료 함량 비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어떤 임곗값을 법률로 정한 최소 요건으로 보아야 하는가? 단위별로 10%, 20%, 50%의 재생원료 함량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조자가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 비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최소 목표치(제조 공장 및 연도별 평균으로 산정)를 적용하며, 재생원료 함량이 해당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조자의 표시·광고를 허용한다. 재생원료 함량에 대한 산정 및 검증 방법론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행 법령로 확립하며,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재생원료 함량에 관한 자발적 표시는 집행위원회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3) 제14조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명시된 요건(예: 재활용 용이성)을 가리키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만 적용하는가, 아니면 지속가능한 포장에 대한 다른 모든 종류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도 적용하는가?

제14조는 *'이 규정에 법적 요건이 규정된 특성'*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예: 재생 알루미늄 함량 관련)의 경우, 기존의 유럽연합 환경 관련 표시·광고 규칙, 특히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에 관한 지침(EU) 제2024/825호」를 준수해야 한다.

[22] [2021년 12월 29일 자]「내 시장의 불공정 기업-대-소비자 상업 관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5/29/EC」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지침인 집행위원회 통지문(유럽연합 관보 C편 제526호, 1~129면)

X. 제조자의 의무

1) 제15조제1항은 제조자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을 준수한 포장재만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무는 포장재 제조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가?

적합한 포장재만 시장에 출시해야 하는 의무는 '제조자'로 정의되는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조자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거나 그에 따라 규정한 요건을 준수한 포장재만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제38조)는 제조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예: 시험실 또는 인증 제도)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EU 적합성 선언서**(제39조)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와 문서를 바탕으로 제조자가 작성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제조자가 서면 위임한 공인 대리인이 작성해야 한다. 이는 EU 적합성 선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실제로 누가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포장재가 지속가능성 및 표시 요건을 준수하도록 법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경제주체는 제조자임**을 의미한다.

2) 수입자와 제조자의 의무에 관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 및 제18조의 실제 적용일은 언제인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하고, 여기에는 제조자와 수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이 규정의 여러 조항, 특히 제5조부터 제12조에 정의된 실체적 의무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일부 실체적 조항은 적용일이 서로 다르며, 이는 종종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특정 이행 조치의 채택 시기와 연계된다.

예를 들어 재활용 용이성과 관련하여 제조자는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요건에 관한 위임 법령 채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비로소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8조 및 부속서 VII에 따른 재활용 용이성 요건을 준수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 위임 법령이 2028년 1월에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요건과 관련 평가 방법론을 완전히 조화한다고 가정할 때, 구속력 있는 재활용 용이성 성능 기준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위임 법령 발효일로부터 2년 후부터 적용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성 및 기타 주요 요건의 추가 적용일:

-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 2030년 1월 1일 또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7조제8항에 언급된 이행 법령 발효일로부터 3년
- 최소화(제10조제1항 및 제2항): 2030년 1월 1일
- 수송포장재, 묶음포장재 및 전자상거래 포장재의 빈 공간 요건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행 법령 발효 후 3년(판매 포장의 빈 공간과 관련해서는 제10조 참조)
-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제11조)는 이 규정 발효일(2025년 2월 11일)부터 적용하되, 최소 회전수 준수 의무는 2027년 2월 12일까지 채택할 제11조제2항의 이행법률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적용한다.
- 재사용 목표: 2030년 1월 1일 또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채택할 제30조제3항에 언급된 재사용 목표 산정에 관한 이행법령 발효일로부터 18개월

3) 플라스틱 운반 백과 같은 '일반' 포장재에 공급자가 일련번호를 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는가?

포장재 또는 포장재 원료 공급자는 제3조제1항제13호의 제조자 정의에 따른 제조자가 아니다(단, '제조자'가 영세기업이고 공급자가 동일한 회원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은 포장재 공급자가 포장재 위나 데이터 매체를 통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은 제조자가 포장재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확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급자가 포장재를 유형,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로 식별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제조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장재 공급자가 포장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종종 생산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 포장재 원료를 공급하는 수입자 또는 유통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수정]

일반적으로 포장재 공급자는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는 관련한 모든 기술 문서를 포함하여 '제조자가 이 규정에 따른 포장재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포장재 제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유럽연합 시장에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제조자/수입자)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비롯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상 관련 요구 사항을 전반적으로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공급자로부터 필수 문서를 확보하여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급자는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관련 문서를 제조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5)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재고로 보유하거나 이미 생산되었으나 해당 날짜까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포장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경제주체는 이를 폐기, 재제조 또는 표시를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신규]

2026년 8월 12일까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으나 이미 생산되어 재고로 있는 포장재는 폐기, 재제조 또는 표시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포장재에 고유 식별 표시와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기하도록 규정한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동봉 문서를 통해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2026년 8월 12일 이후에 제조되는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에 직접 고유 식별 표시와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봉 문서를 사용해야 한다.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지할 수 있다.

6) 이미 생산한 포장재의 공급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공급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는 경우, 포장재 제조자는 어떻게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신규]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제조된 포장재에 대한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경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상 제조자는 이전 공급자에게 요청하거나 기업 인수·합병에 따른 신설·존속 기업에 요청하는 방법 또는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7) 어떠한 상황에서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무를 동봉 문서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가? [신규]

이러한 의무는 포장재 유형이나 사용한 원료와 관계없이 2026년 8월 12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포장재의 크기나 특성상 고유 식별자와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포장재에 동봉되는 문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포장재에 정보를 부착할 수 있는지는 포장재의 물리적 치수, 형태 및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2026년 8월 12일까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으나 이미 생산되었거나 재고로 보관 중인 포장재 역시 시장

출시 전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동봉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8) 실제로는 제15조제5항의 요건이 모든 개별 포장재 단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가? [신규]

제15조제5항은 포장재에 일련번호, 제조번호 또는 기타 동등한 요소와 같이 고유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적합성 검증 및 시장 감시 목적으로 시장에 출시한 포장재의 추적성을 촉진하는 것, 즉 포장재(예: 포장재 유형, 모델 또는 생산 배치)를 식별하여 관련 기술 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추적성 목적으로 포장재 단위의 모든 개별 구성요소에 개별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컵, 뚜껑, 슬리브 또는 표시로 구성된 요구르트 컵의 경우, 판매포장재의 한 구성요소에만 필수 정보를 표시하더라도 충분하다.

아울러 포장재의 크기나 특성상 식별자를 포장재 자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5항에 따라 포장 제품에 동봉되는 문서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별은 제조번호 또는 기타 동등한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품목이 아닌 포장재의 유형 또는 제조번호를 지칭할 수 있다.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접착테이프, 일반 플라스틱 백 또는 건조제 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표준화된 포장재 품목은 대개 개별 단위 수준이 아닌 생산 배치 수준에서 추적할 수 있다.

9) 제조자가 제3자에게 책임을 위임할 수 있는가? [신규]

제15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조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재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제조자는 포장재를 시장 출시하기 전에 제15조제2항에 명시된 조치를 포함한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기타 요구되는 기술 문서 편찬(제38조 및 제39조와 부속서 VII 및 VIII 참조)).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조자는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예: 실험실 또는 인증 제도) 수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EU 적합성 선언서와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 및 문서를 바탕으로) 제조자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서면 위임장을 통해 제조자가 임명한 공인 대리인이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EU 적합성 선언서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여전히 제조자에게 있다). 기술 문서와 관련하여, 제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를 작성할 의무는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자는 이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6조는 공급자가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제조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포장재 공급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제조자는 규정을 준수하는 포장재를 시장 출시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경제주체로 남는 체계를 확립한다.

그러나 제17조제2항에서도 명확히 하듯이, 제조자가 임명한 공인 대리인은 제조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 문서를 국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국가 기관과 협력하며 관련 문서를 제공하는 등 특정 기타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제조자가 위에서 언급한 일부 작업을 수행하도록 누구를 지정하든 상관없이, 제조자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따라 포장재 규정 준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경제주체로 남으며, 이 법적 책임은 계약상 약정을 통해 이전할 수 없다.

10) 제조자와 수입자는 포장재의 '*개념적 설계, 제조 도면 및 구성 요소의 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공급자가 이 설계 정보를 보관하고 요청 시 당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신규]

제조자는 시장 출시하는 포장재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파생된 의무를 포함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법적 책임이 있다. 국가 기관에 관한 규정 준수를 문서화하기 위해,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7항은 포장재의 제조자와 수입자가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를 1회용 포장재의 경우 5년, 재사용 가능 포장재의 경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속서 VII은 기술 문서에 최소한 '개념적 설계, 제조 도면 및 구성 요소의 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조자는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관련 EU 및 국가 법률에 따라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11) 제18조는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한다. 수입자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신규]

포장재가 제3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는 EU 외부에 설립된 제조자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준수했는지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입자는 2026년 8월 12일부터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제38조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3국의 제조자가 수행했으며 해당 제조자가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했다.
- 제조자는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했다.
- 포장재에 필수 문서를 동봉했다.

제18조는 수입자가 포장재에,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동봉 문서에 성명 또는 명칭, 등록상호 또는 등록상표, 우편 주소 및 가능한 경우 전자 통신 수단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포장재에 정보가 없다고 해서 규정 준수를 입증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수입자가 시장 출시하려는 수입 일반 포장 원료 또는 상표가 없는 포장 원료(예: 종이 시트)도 또한 같다. 이러한 포장재를 시장 출시하는 수입자는 문서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원칙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하는 제품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상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제3국의 공급자 또는 제조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계약상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수입 일반 포장재 또는 상표가 없는 수입 포장재의 경우 모든 요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선적 서류와 같이 수입 시 포장재에 동봉한 문서를 사용하여 제18조제2항d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12) 비유럽연합 목적지를 향해 유럽연합을 통과하는 포장재도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신규]

유럽연합 통과는 유럽연합의 일반 제품 규칙 및 관세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 제19항목에 명시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려는 포장재 또는 포장한 제품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재 또는 포장한 제품을 '수입신고수리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유럽연합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유럽연합 내 단순 통과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시장 출시로 보지 않으므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수입 제품의 경우 시장 출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입신고수리 목적으로 신고'[23]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수입신고수리의 목적은 모든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하여 해당 물품이 유럽연합 시장에서 공급되고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신고한 제품은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 조화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신고수리와 시장 출시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원격 판매의 경우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시장 출시가 발생한다.

특정 기업이 포장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한 후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해당 포장 제품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상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 출시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소유권, 점유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 이전을 위한 둘 이상의 법인 또는 자연인 간의 청약이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되거나 시장에 출시되지 않고 유럽연합을 통과하기만 하는 경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13) 예를 들어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요구되는 정보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신규]

식품 관련 법령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상이한 법적 체계로서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지 아닌지는 식품 관련 법령의 특정 조항과 그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유형 및 배치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5항: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5항은 포장재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형, 제조번호, 일련번호 또는 그 밖의 요소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포장재의 크기나 특성상 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 제품에 동봉되는 문서에 해당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포장재의 식별은 (식품 담당 관할 기관이 아닐 수 있는) 관할 기관이 포장재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목적을 위해 포장재 제조자가 작성한 적합성 선언서("DoC")를 연결할 수 있게 하려고 필요하다. 식품 관련 법령의 목적을 위해 제공된 이력 추적 정보는 관할 기관이 포장재를 식별할 수 있고 적합성 선언서(DoC)와 연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포장재 자체나 동봉 문서에 표시되어 있음을 보장할 수 없는 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5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6항: 포장재 제조자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상 '제조자'의 정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69/2011호」[24](「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제공(FIC) 규정」) 제8조는 책임 있는 식품 사업자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책임 있는 식품 사업자와 포장재 제조자가 항상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인 것은

[23] 집행위원회의 '유럽연합 제품 규칙 이행에 관한 블루 가이드(Blue Guide)' 제2.3절 및 제2.5절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통지문 제19항목을 참조한다.

[24] [2011년 10월 25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24/2006호 및 (EC) 제1925/2006호를 개정하고, 집행위원회 지침 87/250/EEC, 이사회 지침 90/496/EEC, 집행위원회 지침 1999/10/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13/EC, 집행위원회 지침 2002/67/EC 및 2008/5/EC, 집행위원회 규정(EC) 제608/2004호를 폐지하며,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69/2011호」(유럽연합 관보 L편 제304호, 2011. 11. 22., 18면)

아니다. 식품 관련 법령의 목적상 특정 사업자를 식별한다는 사실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목적상 제조자의 신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 사업자와 포장재 제조자가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인 경우, 제공되는 정보가 두 유럽연합 법령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 규정」 제9조제1항h목은 식품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같은 규정 제12조는 해당 정보의 표시에 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6항은 포장재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상호 또는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연락 가능한 우편주소 및 가능한 경우 전자 통신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나아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6항은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즉 물리적 형태나 포장재 상의 QR 코드로 제공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묶음포장재가 사용되고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매체가 표시된 경우) 묶음포장재 상의 QR 코드 또는 동봉 문서로 제공하는 방식을 명시한다.

따라서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 규정」에 따라 식품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른 포장재 제조자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을 반드시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주체가 식품 사업자와 포장재 제조자 모두를 위한 정보를 단일 세트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두 유럽연합 법령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즉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 규정」만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4) 명칭이나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맞춤형 수송포장재의 제조자는 누구인가? [신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 맞춤형 포장재를 주문하는 경우, 해당 주문을 한 기업을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상 제조자로 본다.

이는 명칭이나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포장재의 경우, 해당 포장재를 주문하고 설계 사양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포장재가 특정 제품을 위해 맞춤 제작된 경우 포장재의 특성은 해당 제품을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결정권은 맞춤형 포장재를 주문한 기업에 귀속된다. 제조자에게 포장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조자에게 필요한 기술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XI. 빈 공간

1) 제24조에 따른 빈 공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제24조제1항은 묶음포장재, 수송포장재 및 전자상거래용 포장재의 최대 빈 공간 비율을 규정하며, 해당 포장재를 충전하는 경제주체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주체는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제조자뿐만 아니라 포장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그 밖의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

2) 제24조제4항의 '최소한으로 필요한'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판매포장재의 빈 공간 비율이란 판매포장재의 총 내부 부피와 포장 제품 부피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이 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종이 파쇄물, 에어쿠션, 기포 완충재(에어캡), 스펀지 완충재, 폼 완충재, 목모, 폴리스티렌 또는 스티로폼 칩과 같은 완충재로 채워진 공간은 빈 공간으로 본다. 판매포장재의 빈 공간 비율에 대해서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상 명시된 최대 한곗값은 없으며, 판매포장재를 충전하는 관련 경제주체가 빈 공간을 최소화하고 이를 기술 문서에 증명해야 한다. 이 조항은 포장재 최소화에 관한 제10조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3) 디자인 특허도 50% 빈 공간 비율 요구 사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포장재 최소화에 관한 제10조와 달리, 제24조에는 포장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적용을 받는 포장재에 대한 특정 면제 조항이 없다. 다만 50% 한곗값은 묶음포장재, 수송포장재 및 전자상거래용 포장재에만 적용된다(제24조제1항).

4) 원형 제품 및 그 밖의 비정형 형상은 빈 공간 계산 방법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2028년 2월 12일까지, 집행위원회는 묶음포장재, 수송포장재 및 전자상거래용 포장재의 빈 공간 비율 계산 방법론을 수립하는 이행 입법을 채택해야 한다(제24조제2항). 해당 방법론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거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큰 빈 공간에 배치되어야 하는 포장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방법론은 비정형 형상의 포장 제품, 둘 이상의 판매포장재 또는 제품을 포함하는 포장재, 액체 제품을 포함하는 포장재, 내용물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포장 제품, 작은 크기로 인해 더 큰 제품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포장 제품, 그리고 운송 라벨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수송포장재 상의 최소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주체는 2030년 1월 1일 또는 이 이행 입법의 발효 후 3년 중 늦은 날까지 빈 공간 비율 한곗값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방법론은 비정형 형상을 비롯한 광범위한 예시를 기반으로 한다.

XII. 특정 포장재의 금지 및 사용

1) 부속서 V 이행의 법적 조화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은 무엇인가?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 회원국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과의 협의를 거쳐 2027년 2월까지 부속서 V를 상세히 *설명하는* 지침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지침에는 적용 대상 포장재 형태의 예시, 규제에 관한 면제 조항, 부속서 V 제2호에서 제외되는 과일 및 채소의 예시적 목록이 포함된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25조제6항).

집행위원회는 지침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해당 지침이 과학적 근거와 최신 기술 발전에 기반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이는 적용 대상 포장재 형태 및 규제 면제 조항에 관한 공통된 이해와 균등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 이행 입법이나 위임 입법을 통해 면제 대상 과일 및 채소 목록을 조화시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나, 집행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과 협력하여 향후 지침에 대한 확고한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진력해 왔으며 해당 지침이 발표되면 회원국들이 이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에는 2032년까지 집행위원회가 포장재 금지 조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새로운 규제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적용 제외 조항 및 면제 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재검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부속서 V 제2호의 '*가공하지 않은 신선 과일 및 채소*'와 '*입증된 필요성*'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공하지 않은 신선 과일 및 채소*'와 '*입증된 필요성*'이라는 용어는 집행위원회 지침 개발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과의 공식 협의를 거쳐 추가로 명확해질 것이다.

'*가공하지 않은 신선 과일 및 채소*'란 변형되지 않은 신선 과일 및 채소를 말한다.

해당 과일 및 채소의 무게가 1.5 kg 미만인 경우, 사전 포장할 수 없다. 집행위원회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가공하지 않은 신선 과일 및 채소 중 어떠한 것이 면제 조항에 적합한지를 설명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3) 부속서 V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예시적 형태 및 제품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열거된 면제 조항을 넘어 추가적인 부문(예: 학교)으로 확대할 수 있는가?

부속서 V 제4호는 숙박·외식·급식업(HORECA) 부문에서 조미료, 보존식품, 소스, 커피 크리머, 설탕 및 양념류에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관한 것이다. 이는 (a) 추가 조리 없이 즉시 섭취하기 위한 테이크아웃용 즉석조리식품 및 (b) 의료 부문만을 명시적으로 면제한다. 예시적 형태는 지침을 통해 마련될 것이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면제 조항 목록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4) 부속서 V 제1호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해당 규제는 *'소비자가 둘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편의 포장으로 설계되어 판매시점에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묶음포장재'*에 관한 것이다. 규제 대상은 사용 편의성과 휴대성을 위해 설계되고 소비자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불필요한 1회용 플라스틱 묶음포장재이다.

금지 조항을 적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포장재의 가장 일반적인

예로는 둘 이상의 재고 보관 단위(SKU)를 묶는 번들용 필름과 수축 필름(수축 랩)이 있다.

그 밖의 예시와 지도 원칙은 지침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간 거래(B2B) 상황의 경우에는 해당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위원회 지침은 예시를 통해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5) 부속서 V 제6호에 따라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 가능 봉투는 금지되는가?

부속서 V 제6호에 따라 모든 극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퇴비화 가능 또는 생분해성 봉투를 포함한다)는 금지된다. 다만 위생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낱개 식품의 판매포장재로 제공되는 봉투는 이러한 조화된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위생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낱개 식품의 판매포장재로 제공되는 극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는 부속서 V 제6호에 따라 금지되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에 대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4조제1항의 40% 감축 목표에 포함된다. 다만 회원국은 해당 특정 유형의 봉투를 감축 목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4조제4항).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은 위생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낱개 식품의 판매포장재로 제공되는 극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퇴비화 가능 또는 생분해성 봉투를 포함한다)를 금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의 시장 출시 제한(금지 조치)은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4조제2항).

6) 호텔 미니어처 화장품을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가? 칫솔, 화장솜 등 위생상의 이유로 포장된 제품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을 기대할 수 있는가?

부속서 V 제5호는 '*개별 숙박 예약만을 목적으로 한 숙박 부문 1회용 포장재*'를 말한다.

이 규정은 '화장품, 위생 및 세면용 제품'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으며, 호텔 구내에서 *요청 시 제공되거나 구매한* 미니어처 포장재를 면제하지 않고 개별 예약만을 목적으로 한 포장재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7년 2월 12일까지 지침을 발표하여 적용 대상 포장재 형태의 예시 및 규제에 관한 면제 조항을 비롯한 부속서 V를 더욱 상세히 설명할 책무를 부여받았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25조제6항). 집행위원회 지침을 적시에 채택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적용일보다 거의 3년 앞서 충분히 명확히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숙박업 부문을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제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재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제품 자체는 포장 없이 여전히 공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7)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행사 및 축제에서 1회용 플라스틱 식음료 포장재를 금지하는가?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장과 축제는 '유럽연합 표준산업분류 제2차 개정판(NACE Rev. 2)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을 가리키는 '숙박·외식·급식업' 정의(제3조제1항제35호)에 포함된다. 유럽통계분류체계의 지침에 따르면, 이를 제공하는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즉석 섭취에 적합한 식사(음료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결정적 요소이다. 다만 부속서 V 제3호에 따라 음용수를 이용할 수 없는 숙박·외식·급식업 부문의 사업장은 금지 조치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된다.

8) 호텔 룸서비스도 부속서 V 제3호의 금지 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호텔이 음식점 영업장 외부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부속서 V 제3호의 포장재 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표준산업분류 제2차 개정판을 참조하는 제3조제1항제35호의 정의에 따라 이해되어야 하는 숙박·외식·급식업 부문에 적용된다. 호텔은 숙박·외식·급식업 부문에 포함되므로 룸서비스는 금지 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호텔이 포장된 식음료를 영업장 외부로 배달하는 경우, 해당 포장재는 제25조 및 부속서 V 제3호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테이크아웃 부문의 리필 및 재사용 관련 의무가 적용된다.

9) 부속서 V의 *'예시적 사례'*란에 명시된 예시 목록은 한정적 열거인가?

해당 문구(*'예시적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 목록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다.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포장재 형태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7년 2월 12일까지 마련될 집행위원회 지침을 통해 추가로 설명될 예정이다.

XIII. 재사용 및 리필

재사용 가능 포장재(제11조)

1) 재사용 가능 포장재의 회전 횟수 또는 운행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는 최소 회전수(순환 횟수)를 보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택할 위임 법령으로 규정한다. 재사용 가능한 수송포장재의 회전수 산정 및 보고 의무는 재사용 체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재사용 체계는 이 의무에서 제외한다(부속서 VI A부 제1호i목). 시스템 운영자가 있는 수거 및 재활용체제는 각각의 개별 재사용 가능 포장재에 대한 회전 횟수 또는 운행 횟수를 보고하거나, 개별 재사용 가능 포장재에 대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 추정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에 규정된 재사용 목표 달성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칙은 제12조제6항에 따라 채택할 이행 입법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해당 법령에는 개별 QR 코드 표시 및 회전 횟수 추적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평균 추정치를 바탕으로 회전 횟수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조자는 재사용 가능 포장재의 설계 및 관련 재사용 체계가 해당 포장재의 최소 회전 횟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기술 문서를 통하여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입증하여야 하며, 개방형 재사용 체계 및 수거 및 재활용체제에서 유통되는 재사용 가능 포장재 모두에 적용한다.

제27조 및 부속서 VI에 따르면, 재사용 체계는 그 안에서 순환하는 재사용 가능 포장재가 위임 법령에 규정된 최소 목표 회전 횟수 이상을 달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는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이 검증한다(제62조제1항h목).

재사용 체계

2) *'개방형'* 재사용 체계란 무엇이며, 그러한 체계의 구체적인 예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개방형 재사용 체계는 재사용 가능 포장재를 단일 시스템 운영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업, 장소, 제품 범주 또는 부문 간에 유통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특징으로 한다. 개방형 재사용 체계가 대가를 지급한 즉시 재사용 가능 포장재가 소비자의 소유물이 됨을 반드시 뜻하지는 않으며, 이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재사용 체계는 통상적으로 표준화된 포장재와 공유 기반 시설(예: 수거, 세척 및 재분배)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시스템 운영자의 존재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상 법적 요구 사항은 아니더라도 물류를 관리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시스템 운영자가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상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체계는 재사용 표시 요구 사항 및 달성한 회전 횟수에 관한 보고 의무에서 제외한다.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체계의 예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다.

0.33 L 롱넥 재사용 가능 병 방식(독일): 이 시스템은 주로 맥주 양조업자가 사용하나, 먹는샘물 기업 및 그 밖의 탄산음료 생산자도 사용한다. 독일양조협회(German Brewers Association)가 발행한 해당 병에 대한 표준과 참여자를 위한 사용권(라이선스) 제도가 있으나, 시스템 운영자는 없다.

유로 팔레트(Euro Pallet): 이 시스템은 팔레트에 대한 표준을 보유하고 생산용 사용권(라이선스)을 발급하지만, 특정 협회(즉, 유럽팔레트협회(EPAL))가 사용권 발급 및 일부 서비스를 담당함에도 시스템 운영자나 시스템 관리는 없다.

3) 재사용 가능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제주체는 적절한 재사용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재사용 가능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제주체는 하나 이상의 재사용 체계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체계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부속서 VI A부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주체는 부속서 VI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체 재사용 체계를 직접 구축할 수도 있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부속서 VI에 재사용 체계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은 각 제품 및 지역적 여건에 따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재사용 체계의 기능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4) 재사용 체계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개방되어야 하는가?

재사용 체계는 규모와 지리적 적용 범위가 다양할 수 있으며, 소규모 지역 체계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회원국 역내에 걸치는 대규모 체계에 이를 수 있다. 재사용 체계가 회원국 전역을 포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체계가 운영되는 지역의 최종 사용자에게 동등한 접근성과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재사용 체계는 해당 재사용 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를 대행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신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는 1회용이든 재사용 가능이든 상관없이 유럽연합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모든 생산자에게 적용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는 재사용 가능 포장재 생산자에게 귀속되지만, 재사용 체계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부속서 VI A부 제1호i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체계의 일부인 재사용 가능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속서 VI의 규정은 재사용 체계를 조직하는 맥락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통지문 제2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스템 운영자가 없는 개방형 체계에서는 재사용 가능 포장재가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 사이에서 유통된다. 따라서 재사용 체계에 참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가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재사용 체계 운영자가 통상 제조자인 개방형 체계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 생산자가 1인만 존재한다.

회원국이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지 않은 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생산자의 재량에 따른다.

수송포장재에 대한 재사용 목표

6) 수송포장재 재사용 목표에 대한 판지 상자의 면제 조항에 간지 및 골판지가 포함되는가?

제29조제4항d목은 재사용 목표 범위에서 판지 상자를 제외한다. 이는 골판지 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에 포함된 면제 조항 목록은 재료, 형태 및 용도 측면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한정적 열거이다. 따라서 판지에 대한 면제는

판지 상자에만 적용하며 간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지는 제29조제1항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형태가 아니므로 애초 재사용 목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수송포장재용 유연성 형태에 대한 면제 조항의 적용을 받는 포장재 형태는 무엇인가?

제29조제4항c목은 수송에 사용하고 [2002년 1월 28일 자]「식품법의 일반 원칙 및 요건 설정, 유럽식품안전청 설립과 식품안전 절차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78/2002호」(Regulation (EC) No 178/2002) 제2조 및 제3조제4호에 정의된 식품 및 사료 또는 「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EU) 제1169/2011호」 제2조제2항f목에 정의된 식품 원료와 직접 접촉하는 수송포장재용 유연성 포장재 형태를 목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제29조제1항에 열거된 배낭 또는 유연중형산적용기와 같은 모든 유연성 형태 중 식품 및 사료와의 직접 접촉에 사용하지 않고 위험물 운송에 사용하지 않으며(제29조제4항a목에 따른 면제 조항) 대형 기계 운송용으로 맞춤 설계되지 않은(제29조제4항b목에 따른 면제 조항) 것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재사용 목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재사용 목표 달성의 계산 규칙에 관한 제30조에 따른 이행 법령의 맥락에서 추가로 명시한다.

8) '팔레트 랩 및 스트랩'은 하나의 형태로 보는가 아니면 두 개의 개별 형태로 보는가?

팔레트 랩과 스트랩은 서로 다른 포장재 형태이나, 제29조에 따른 재사용 목표 준수를 계산할 목적상 동일한 수송 단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는 재사용 목표 달성의 계산 규칙에 관한 제30조에 따른 이행 법령에서 추가로 명확히 규정한다.

9) 특정 형태가 제29조제1항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송포장재에 대한 재사용 목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밀봉 봉투와 같은 모든 유연성 포장재 형태가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제1항에 열거된 형태만 포함되는가?

제29조제1항은 유연성 형태를 포함하여 재사용 목표의 적용을 받는 포장재 형태의 한정적 열거 목록을 규정한다. 밀봉 봉투가 중형산적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4항c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식품 및 사료와 직접 접촉하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사용 목표 범위에 속한다.

10) 수송 단위의 정의는 무엇인가?

해당 용어는 이 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나,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택할 이행 법령에서 재사용 목표 달성의 계산 규칙을 정할 목적으로 향후 정의할 수 있다.

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

11) 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는 비알코올음료와 알코올음료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가, 아니면 통합 목표인가?

제29조제6항에 규정된 음료 재사용 목표는 알코올음료 및 비알코올음료 모두에 적용한다. 소매업자, 바 및 음식점과 같은 최종 유통자는 재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재사용 가능 포장재로 판매 공급할 음료의 유형(알코올, 비알코올 또는 둘 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유통자는 자체 상표(PB) 음료가 공정하고 비례적인 기준에 따라 재사용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2) 어떠한 음료가 음료 재사용 목표 범위에 해당하는가?

제29조제6항의 음료 재사용 목표 범위에 속하는 음료는 2027년 2월 12일까지 채택할 집행위원회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해당 지침은 회원국 및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제29조제7항은 특정 음료를 재사용 목표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다. 이는 다음 각 호의 음료를 포함한다.

- 「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EU) 제1169/2011호」[25] 제24조에 따른 부패하기 매우 쉬운 음료
- [2013년 12월 17일 자] 「농산물 시장의 공통 조직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26] 부속서 I 제XVI부에 열거된 우유 및 유제품과 [1987년 7월 23일 자] 「관세 및 통계 품목 분류표와 공동관세율에 관한 이사회 규정(EEC) 제2658/87호」[27] 부속서 I의 결합품목분류표(CN) 코드 2202 99 11 및 2202 99 15에 해당하는 유제품 유사물, 「규정(EU) 제1308/2013호」 부속서 VII 제II부 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에 열거된 포도주 제품 범주 및 관련 규정에 정의된 가향 포도주 제품

13) 회원국이 음료에 대한 국가 재사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가?

회원국은 2030년까지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폐기물 발생 예방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제51조제2항c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조화된 조치를 국가 조치로 보완할 수 있다. 회원국은 제29조제6항에 규정된 조화된 재사용 목표를 상향하거나 다른 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면제된 음료를 포함할 수 있다.

국가 재사용 목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시장 조화 목표를 저해하지 않도록 폐기물 발생 예방 목표 달성에 이것이 필요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기술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목표를 기술규정정보시스템 절차를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기존의 국가 재사용 의무를 2030년 1월 1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일자부터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재사용 목표를 우선 적용한다. 회원국이 국가 재사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를 참조한다.

---

[25] [2011년 10월 25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24/2006호 및 (EC) 제1925/2006호를 개정하고, 집행위원회 지침 87/250/EEC, 이사회 지침 90/496/EEC, 집행위원회 지침 1999/10/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13/EC, 집행위원회 지침 2002/67/EC 및 2008/5/EC, 집행위원회 규정(EC) 제608/2004호를 폐지하며,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169/2011호」(유럽연합 관보 L편 제304호, 2011. 11. 22., 18면)

[26] [2013년 12월 17일 자] 「농산물 시장의 공통 조직 수립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EEC) 제234/79호, (EC) 제1037/2001호, (EC) 제1234/2007호를 폐지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유럽연합 관보 L편 제347호, 2013. 12. 20., 671~854면)

[27] [2018년 2월 7일 자] 「미국 원산의 특정 제품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196」(유럽연합 관보 L편 제44호, 2018. 2. 16., 1면)

14) 음식점 또는 바 운영자도 음료에 설정된 10% 재사용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가?

숙박·외식·급식업 부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최종 유통자는 제29조에 규정된 음료 재사용 목표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장 면적이 100 m^2 미만인 최종 유통자는 제29조제6항에 따라 이 의무에서 제외한다. 회원국 역내에서 연간 1,000 kg 미만의 포장재를 시장 공급하고 영세기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최종 유통자 역시 제29조제13항a목에 따라 음료 재사용 목표에서 제외한다.

15) 1회용 음료 포장재가 보증금반환제도의 일부인 경우 음료 재사용 목표에서 제외되는가?

제29조제6항의 음료 재사용 목표 달성 의무는 소매업자 및 음식점과 같은 최종 유통자에게 적용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보증금반환제도 대상 1회용 음료 포장재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 조항을 두지 않으나, 다수의 면제 조항 및 유연성을 규정한다. 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매장 면적 100 m^2 미만인 모든 최종 유통자는 전면 제외함(제29조제10항)
  o 회원국은 주민 2,000명 미만의 작은 섬에 소재한 최종 유통자를 제외할 수 있음(제29조제11항)
- 회원국은 매장 면적이 인구밀도 1 km^2당 54명 미만인 기초지자체에 위치하는 경우 최종 유통자를 제외할 수 있음 다만 거주 인구 5,000명을 초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매장 면적을 둔 최종 유통자에게는 해당 목표를 적용함(제29조제11항)
- 회원국은 최종 유통자가 재사용 의무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풀(pool)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이는 예컨대 밀집 지역 및 원격 지역에서 최대 5인의 최종 유통자가 재사용 의무를 분담할 수 있음을 뜻함(제29조제12항)
- 영세기업으로서 한 회원국 내에서 연간 1,000 kg 이하의 포장재를 시장 공급하는 모든 최종 유통자는 전면 제외함(제29조제13항)
- 회원국은 제29조제14항에 따라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 제25호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서 최종 유통자에 대한 추가 면제 조항을 규정할 수 있음

한 회원국에서 모든 면제 조항과 유연성이 완전히 적용되는 경우, 음료 재사용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최종 유통자의 수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최종 유통자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면서 목표 달성에 있어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누릴 수 있다.

16) 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는 2030년부터 적용하므로 10% 목표 적용에 필요한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034년에 재사용 목표를 재검토한다. 집행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 포장재 형태나 경제주체를 재사용 목표에서 제외하는 권한을 행사하는가?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 제29조에 규정된 수송포장재, 묶음포장재 및 음료에 대한 조화된 재사용 목표를 보완하는 위임 법령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위임 법령은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서 최신 과학적·경제적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택할 수 있다.

위임 법령을 채택할 권한은 특정 부문에서 겪는 경제적 제약에 직면한 경제주체를 면제하거나, 더 나은 규제 지침(Better regulation: guidelines and toolbox)https://commission.europa.eu/law/law-making-process/better-regulation/better-regulation-guidelines-and-toolbox_en에 명시된 적절한 영향 평가에 따라 위생 및 식품 안전 문제 또는

환경 문제로 인하여 재사용 목표 달성이 저해되는 특정 포장재 형태를 면제할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XIV. 플라스틱 운반 봉투

1) 퇴비화 가능 쓰레기봉투를 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로 보는가?

아니다. 제3조제1항제1호의 '포장재' 정의 및 제3조제1항제55호의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 정의에는 판매용 봉투(즉, 운반용 봉투)만 포함된다.

쓰레기봉투 또는 잔반 포장용 봉투는 포장재가 아닌 제품이므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회원국이 모든 극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를 금지할 수 있는가?

위생 목적으로 필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낱개 식품의 판매포장재로 제공되는 극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25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의 지속가능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봉투를 금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원국은 봉투가 제조, 재활용 또는 폐기될 때의 환경적 영향 및 그 의도된 용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금지 조치(시장 규제)는 비례적이어야 하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회원국은 유럽연합 차원의 금지 조치 또는 국가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 봉투를 포함하여 모든 극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의 소비량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상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운반 봉투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퇴비화 가능 봉투는 극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로서 위생상의 이유로 필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낱개 식품용으로 필요한 경우 제25조 부속서 V 제6호에 따른 일반적인 포장재 금지 조치에서 제외한다.

그 밖의 극경량 또는 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의 사용은 제25조 및 부속서 V에 따라 금지되지 않으나, 제34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국가 금지 조치 및 기타 시장 공급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원국은 유럽연합 또는 국가 수준에서 금지되지 않은 극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 또는 경량 플라스틱 운반 봉투에 대하여 제9조제2항a목에 명시된 조건 하에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XV. 포장재의 적합성 평가

1) 기업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의무화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언제부터 이행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71조). 다만 특정 핵심 조항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여러 사례에서 의무의 발효는 필요한 이행 법령 또는 위임 법령이 채택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와 회원국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관련 조항에 구체적인 적용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적용 일자를 적용하므로, 기업은 2026년 8월 12일까지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속서 VII은 포장재 '유형'을 언급한다. 이 문구는 부속서 II 표 1의 '유형'과 같은 의미인가?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부속서 VII에서 언급된 '유형'이라는 단어는 부속서 II에서 언급된 포장재 유형과 같지 않다. 부속서 VII은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 사용하는 포장 원료가 아니라 각 포장재 형태 또는 각 포장재 제조단위/일련군을 의미한다.

3) 부속서 VIII에 언급된 '*포장재의 고유 식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인 제품 이력 추적으로 충분한가?

이 규정은 '*포장재의 고유 식별*'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부속서 VIII에 언급된 이 문구는 포장재 자체가 유형, 제조번호(배치) 또는 일련번호 측면에서 식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에 대하여 단일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요구되는 모든 적합성 선언서 묶음을 단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포장 제품이 [2011년 1월 14일 자]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플라스틱 물질 및 물품에 관한 위원회 규정(EU) 제10/2011호」(유럽연합 관보 L편 제12호, 2011. 1. 15., 1~89면) 제15조에 따른 적합성 선언이나 [2004년 10월 27일 자]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물질 및 물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35/2004호」(유럽연합 관보 L편 제338호, 2004. 11. 13., 4~17면) 제16조와 같이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작성을 요구하는 둘 이상의 유럽연합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모든 유럽연합 법령에 대하여 단일한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해당 선언서에는 관련 유럽연합 법령 및 관보 게재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된 개별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의 서류철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자는 단일 적합성 선언서 작성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갖는다. 다만 단일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 포장재와 포장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단일 적합성 선언서를 서로 다른 적합성 선언서가 포함된 서류철로 제시할지, 아니면 단일 문서로 제시할지 결정할 수 있다. 단일 문서로 제시하더라도 포장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여전히 별도로 수행하고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적합성 평가는 병, 마개장치 및 라벨과 같이 포장재의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포장 단위 전체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는가? [수정]

적합성 평가는 포장 단위 전체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적합성 선언서 역시 포장 단위 전체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즉, 병, 마개장치 및 라벨로 구성된 포장 단위의 경우 전체 단위에 대하여 단일 적합성 평가 및 관련 적합성 선언서 작성으로 충분하나, 해당 선언서에는 그 단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모든 개별 구성요소에 관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제6조의 재활용 용이성 및 제7조의 재생원료 함량에 규정된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적합성 평가 절차가 필요한가?

제6조의 재활용 용이성 및 제7조의 재생원료 함량에 규정된 면제 조항의 준수 여부는 실질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7) 제15조제5항의 '유형, 제조번호(배치) 또는 일련번호나 그 밖의 요소'라는 문구는 제조자가 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해당 문구는 해당 포장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 제조번호, 일련번호 또는 그 밖의 요소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8) 제조자는 자사의 포장재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회원국의 주무당국에 연락할 의무가 있는가? [수정]

아니다. 제조자가 해당 회원국 역내에 포장재를 출시한다는 사실을 주무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검이 시행되는 경우 기관이 제조자에게 직접 연락한다.

제조자 또는 유통자는 특정 회원국의 시장에 출시한 포장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 관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5항 참조). 제조자가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에 소재한 유통자의 창고로 제품을 납품하고 해당 유통자가 그 창고로부터 여러 국가의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해당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알릴 의무는 유통자에게 있다.

9) 유럽연합 조화표준과 관련하여 적합성 추정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은 포장재의 시장 출시를 위한 여러 요건(필수 요건)을 규정하였다. 이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에 따르면 포장재가 유럽연합 관보[28]에 게재된 조화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이러한 필수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조화표준은 지침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전문 제58단락 참조), 이러한 표준에 기반한 적합성 추정 효력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2029년 말까지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의 포장재 감량화 필수 요건과 관련된 제70조제1항b목에 규정되어 있다. 즉, 관련 조화표준은 해당 일자까지 적합성 추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행위원회는 혼선[29]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 조화표준 목록을 폐지하는 공식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28] 'EN 13427:2004 포장재 -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분야 유럽표준 적용을 위한 요구 사항', 'EN 13429:2004 포장재 - 재사용', 'EN 13430:2004 포장재 - 물질 재활용을 통한 회수 가능 포장재에 대한 요구 사항', 'EN 13431:2004 포장재 - 최소 순발열량 명세를 포함한 에너지 회수 형태의 회수 가능 포장재에 대한 요구 사항', 'EN 13428:2004 포장재 - 제조 및 구성에 특정한 요구 사항 - 발생원 감량을 통한 예방', 'EN 13432:2000 포장재 - 퇴비화 및 생분해를 통한 회수 가능 포장재에 대한 요구 사항'

[29] 조화표준이 포함된 안전 관련 법령의 경우, 폐지된 법령에 따라 유럽연합 관보에 인용된 조화표준 출처가 유럽연합 관보(OJEU)에서 철회되지 않는 한 적합성 추정 목적상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해석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Global Garden Products 대 집행위원회 사건, T-474/15)에 근거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뒷받침하는 신규 또는 개정 조화표준에 대한 적합성 추정은 관련 조화표준을 기재한 집행위원회 결정이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출처 게재를 통하여 해당 일자 이후부터 적합성 추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10)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었으나 크기가 다른 포장재의 경우, 모든 크기에 대하여 각각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크기에 대해 하나의 선언서로 충분한가?

부속서 VII에 따르면 제조자는 각 포장재 유형별로 서면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적합성 선언서에는 선언서가 작성된 대상 포장재를 명시하여야 한다. 해당 문서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에 대한 포장재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 문서는 적용 가능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한 포장재의 설계, 제조, 사용 및 작동을 다루어야 한다. 예컨대 감량화 요구 사항의 평가는 포장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재생원료 함량의 평가는 포장재의 중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적합성 선언서는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 및 포장 제품을 고려할 때 포장재가 동일한 특성을 갖는 수준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이 다른 경우, 제조자는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하여 단일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병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담고 있고 크기 차이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구 사항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제조자는 해당 병들에 대하여 단일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조자는 포장재의 연속 생산이 이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포장재 설계나 특성의 변경뿐만 아니라 적합성을 선언하거나 검증하는 기준이 되는 조화표준 또는 그 밖의 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재평가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수송포장재 역시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서 작성이 필요한가?

수송포장재에 관한 면제 조항은 없다. 실제로 팔레트, 팔레트 칼라, 랩 및 스트랩과 같이 완전히 상이한 포장재 유형은 별도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개별적인 적합성 선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12) 제조자가 수행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누가 감독하는가?

제조자는 재활용 용이성 성능 등급 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 평가 결과는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기술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감시당국은 국가 계획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며 제68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정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13) 경제주체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국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추가적인 국가 요건
2)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의 특정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추가적인 국가 요건

제1호의 경우 과태료 부과는 경제주체에 대한 저해 효과를 유발하고 시장 장벽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2호의 경우 이 규정이 회원국에 규정 기준을 초과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를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내 과태료는 조약의 일반 원칙, 특히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회원국에 있다. 이러한 증거는 기술규정정보시스템 통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적합성 선언서는 어떤 언어로 작성하여야 하는가? [신규]

적합성 선언서는 해당 시장감시당국이 요청 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포장 제품이 공급되는 회원국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는 "*포장재가 시장에 출시되거나 시장에 공급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하여야 한다.*"

XVI. 신규 규칙의 집행(2026년 8월 12일 적용일 직후)

1)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규칙을 포장재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금지되는가? [신규]

아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의무의 집행이 무역 흐름, 공급망 또는 소비자의 상품 접근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62조에 따라 회원국은 해당 조문에 규정된 미준수 사례를 인지한 경우 먼저 관련 경제주체에게 해당 미준수 상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즉, 회원국 측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경제주체는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었다는 경고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받아야 한다.

경제주체가 미준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국은 추가 조치(규정 미준수 포장재의 금지, 리콜 또는 회수 등)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시장감시당국은 제재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기보다 인식 제고, 정보 요청 또는 적응을 위한 합리적인 기한을 둔 시정 조치 요청 등을 통하여 책임 있는 경제주체가 새로운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XVII. 폐기물 발생 예방

1) 포장폐기물 감축 목표는 어떻게 이행되는가?

포장폐기물 감축 목표의 이행 책임은 각 회원국에 있다. 제43조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필요한 폐기물 감축 조치를 시행할 책임은 회원국에 있다. 이 규정은 재사용 목표 설정, 테이크아웃 부문에 대한 리필 및 재사용 의무, 포장재 사용 금지, 빈 공간 비율 기준을 포함한 포장재 감량화 요구 사항 등 여러 포장폐기물 발생 예방 조치를 조화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조화된 조치의 일부를 이행하고 제43조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국가 폐기물 발생 예방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몫이다.

제43조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조화된 조치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국가 조치에는 경제적 인센티브, 생산자책임재활용 체계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에는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제29조제15항 및 제16항에 따른 조건의 경제주체에 대해 상향되거나 추가적인 재사용 목표와 같은 추가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국가 이행 조치는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무역 장벽이나 경쟁 왜곡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포장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활용 용이성과 같은 다른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더 가벼운 포장재 원료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원국이 폐기물 발생 예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각 회원국은 [2005년 3월 22일 자]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62/EC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련 서식을 제정하는 위원회 결정 2005/270/EC」(유럽연합 관보 L편 제86호, 2005. 4. 5., 6~12면)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보고된 2018년 1인당 발생 포장폐기물 대비 1인당 발생 포장폐기물을 2030년까지 최소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보고한 포장폐기물 발생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회원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적절한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3) 폐기물 감축 목표는 회원국 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폐기물에 적용되는가, 아니면 생활 포장폐기물에만 적용되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산업, 기타 제조업, 소매 또는 유통, 사무실, 서비스업 또는 가정 등 발생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포장재 및 모든 포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발생 포장폐기물의 계산과 관련된 규정(제53조제2항 참조)은 회원국 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폐기물을 포괄한다. 따라서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 포장폐기물 발생 통계 데이터는 회원국 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폐기물을 포괄한다.

제43조를 어떻게 이행하고 해당 조항에 규정된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회원국이 결정한다. 회원국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폐기물을 국가 폐기물 발생 예방 목표에서 제외하고 생활 포장폐기물에만 집중할 수 있다. 회원국은 생활 포장폐기물 관리 체계와 산업 및 상업 포장폐기물 관리 체계를 각각 분리하여 기구축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제43조제3항).

4) 회원국은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국내 규칙을 기술규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의무가 있는가?

「지침 (EU) 제2015/1535호」[30]는 회원국이 제품(및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모든 기술 규정

[30] [2015년 9월 9일 자]「기술 규정 및 정보사회서비스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 수립에 관한

초안을 국내법으로 채택하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기술 규정'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제품의 마케팅이나 사용,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사업자의 설립을 위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준수가 강제되는 회원국이 규정한 기술 사양, 기타 요건 또는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규칙을 의미한다. 이는 제품의 제조, 수입, 마케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서비스 제공·이용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행정 조항도 포괄한다. 따라서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신규 이행 조치 초안은 기술규정정보시스템[31]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기존 국내 조치를 기술규정정보시스템 통보 절차에 따라 재통보할 필요는 없다.

회원국의 통보는 초안 단계, 즉 실질적인 수정이 여전히 가능한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지침 (EU) 제2015/1535호 제1조제1항g목).

통보되지 않은 국내 기술 규정은 국내 법원에 의하여 개인[32]에게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

5) 포장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 국가 조치가 *'포장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가벼운 포장재 원료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조치가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의 양도 감축'*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회원국의 의무

이 의무는 회원국에 부여되며, 회원국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폐기물 발생 예방 프로그램 및 기술규정정보시스템(TRIS) 통보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알려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일반적인 점검 권한을 가지며 추가 지침을 제공하여 회원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EU) 2015/1535」(유럽연합 관보 L편 제241호, 2015. 9. 17., 1~15면)

[31] 기술규정정보시스템(유럽집행위원회)

[32] 'CIA 시큐리티' 사건(사건 C-194/94)

XVIII. 생산자책임재활용

1) 영세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에서 제외되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또는 [2008년 11월 19일 자] 「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98/EC」(유럽연합 관보 L편 제312호, 2008. 11. 22., 3~30면)에는 영세기업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의 일반적인 면제 조항이 없다. 모든 생산자는 회원국 역내에서 최초로 시장 공급하는 포장재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는 제44조에 따라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하고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규모 생산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회원국 시장에 연간 10 t 미만의 포장재를 시장 공급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더 완화된 보고 의무를 규정한다. 나아가 회원국 및 생산자책임기구(PRO)는 출신지나 규모와 관계없이 생산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소규모 생산자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워서는 아니 된다.

회원국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적용 이후에도 폐기물 기본 지침(WFD)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규모 생산자에 대하여 더 낮은 행정 수수료를 적용할 권리를 유지한다. 폐기물 기본 지침은 적절한 폐기물 관리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의 경제적 생존 능력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원국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유럽연합 입법에 따라 설정된 폐기물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축된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의 경우 제품 생산자가 필요 비용의 최소 80%를 부담함
- 순수하게 회원국 법령에 설정된 폐기물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7월 4일 또는 그 이후에 구축된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의 경우 제품 생산자가 필요 비용의 최소 80%를 부담함
- 순수하게 회원국 법령에 설정된 폐기물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7월 4일 이전에 구축된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의 경우 제품 생산자가 필요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함
- 단, 나머지 비용은 최초 폐기물 배출자 또는 유통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이 적용 제외 조항은 2018년 7월 4일 이전에 수립된 생산자책임재활용체계에 따라 제품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 비율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문맥 및 포장재가 수송포장재, 판매포장재, 묶음포장재, 1차 생산 포장재 또는 서비스 포장재인지 아닌지 (에 따라 생산자를 포장재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자로 규정한다. 제조자가 영세기업이고 해당 제조자가 포장재의 생산자이기도 한 경우 포장재 원료 공급자가 동일한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다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요구 사항에서 제외한다.

2)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각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조화시키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여러 회원국에서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을 판매하는 경제주체의 행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특정 행정적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조화시킨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등록, 보고 기한 및 주기,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의 세분성 수준과 관련이 있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회원국 내에서 생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도 조화시킨다. 기업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포장재 유형 및 판매 방식이다. 생산자 정의의 적용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문서 제II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에코 모듈레이션(분담금 차등화) 기준을 조화시킨다. 에코 모듈레이션은 제6조에 설정된 재활용 용이성 성능 등급을 기반으로 한다. 회원국은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차등화 체계를 적용할 때 재사용 가능성 및 재생원료 함량과 같은 추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분야에서 회원국은 국가별 여건 및 법적 환경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체계 및 폐기물 관리를 조직할 수 있는 폭넓은 유연성을 계속 유지한다.

3) 생산자가 생산자 등록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최초의 역년은 언제인가?

모든 회원국은 생산자가 등록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생산자 등록부를 구축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 등록 및 등록부 보고를 위한 서식을 규정하는 이행 법령을 채택하여야 한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44조제14항). 회원국은 해당 법령 채택 후 등록부를 구축하기 위한 18 개월의 기간을 갖는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44조제1항).

생산자는 매 직전 역년 전체에 대하여 6월까지 보고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조화 규칙에 따라 2030년 6월 1일까지 최초로 국가 생산자책임재활용 등록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무엇인가?

생산자의 서면 위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시장 공급되는 각 회원국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45조제4항). 그러나 생산자책임재활용 등록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은 오직 생산자 본인, 생산자책임기구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만 있다. 생산자가 해당 플랫폼을 공인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자를 대행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5)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자에게 플랫폼 이용을 허용하기 전에 모든 생산자를 점검하여야 하는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에 관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2022년 10월 19일 자] 「디지털 서비스 단일 시장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2/2065」(디지털 서비스법(DSA)[33])의 의무에 따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소비자가 생산자와 원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정보와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자체 인증서를 생산자로부터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생산자에게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기 전에 이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검증하여 제공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완전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45조제6항). 이는 생산자에게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45조제8항).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통상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를 생산자 등록부의 데이터와 대조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2022년 10월 19일 자] 「디지털 서비스 단일 시장 및 지침 2000/31/EC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2/2065」(유럽연합 관보 L편 제277호, 2022. 10. 27., 1~102면)

6) 회원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점검하기 위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명시된 것 이상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가? [신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생산자가 등록하고 회원국 역내에서 시장 공급, 수거 및 재활용된 포장재의 양을 회원국의 생산자 등록부에 보고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조화시킨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44조제5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VIII장에 규정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준수를 점검할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 등록 목적을 위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상의 추가 정보나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은 제40조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제44조에 따른 생산자 등록

(b) 제4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보고 요구 사항의 조직 및 점검

(c) 제45조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d) 제47조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 이행에 관한 인가

(e) 제56조에 따른 정보 제공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VIII장에 규정된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관리를 위한 의무를 집행할 목적상, 그리고 이것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조화되지 않은 한, 회원국은 필요하고 비례적인 범위 내에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규정된 것 이상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XIX. 반납 및 수거 체계

1) 재생원료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수거 체계 및 재활용 시설은 재생원료의 고유한 품질이 유지되거나 추가 재활용되어 수량, 품질 또는 기능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동일한 방식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회수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에 대하여 우선적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48조제2항).

이 조항의 목적은 경제주체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따른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돕는 데 있다. 따라서 회원국은 플라스틱 포장재와 관련하여 그러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한 체계가 구축되는 경우 플라스틱 재생원료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은 시장 가격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우선적 접근권이 부여되는 재생원료의 양은 특정 기간 내에 경제주체가 해당 회원국 역내에서 시장 공급한 포장재의 양에 상응하여야 한다. 그러한 우선 접근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회원국은 이러한 조건이 준수되고 점검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규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체계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포장재를 분리수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리수거는 폐기물 기본 지침(WFD)에서 *'특정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폐기물 흐름을 유형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유지하는 수거'*로 정의된다. 회원국은 폐기물 위계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규정하고 재사용 준비 및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와 기반 시설이 구축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회원국은 포장재 원료의 수거가 제52조에 규정된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무적인 수거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분리수거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양하다. 예컨대 제50조에 따른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재질의 1회용 음료 포장재 분리수거는 보증금반환제도 체계 내에서의 수거를 의미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 요구 사항을 준수할 목적 및 '대규모(at scale)' 재활용 방법론을 수립할 목적을 위한 분리수거 계산 및 보고 요구 사항은 제56조제7항에 따라 2027년 2월 12일까지 채택될 이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재활용 목표 계산 시 복합재질 포장재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제53조제3항에 따라 회원국은 포장 단위에 포함된 모든 재료를 기준으로 복합재질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목표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에 따라 회원국은 특정 재료가 포장 단위의 미미한 부분을 구성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장 단위 총 질량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 한곗값은 포장 단위의 총질량에 적용한다.

4) *'철금속'*, *'철금속(주석도금강판 포함)'* 및 *'강철'*이라는 용어는 모두 '주석도금강판을 포함하는 철금속'의 동의어인가?

*'철금속(주석도금강판 포함)'*이라는 용어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서 재사용 가능 포장재에 대한 회원국의 보고 맥락에서만 사용된다. 이는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기준이 수립될 재료 및 형태에 관한 부속서 II 표 1에서도 언급된다.

일관성을 위하여 부속서 XII 표 3의 '*강철*'이라는 용어와 제52조제1항b목 및 d목 그리고 부속서 XII 표 1에서 사용된 '*철금속*'이라는 용어 역시 주석도금강판을 포함한다.

XX. 보증금반환제도

1) 보증금반환제도(DRS) 구축 면제 조항은 두 가지 음료 포장재 유형에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되는가?

1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및 금속 음료 용기에 대한 90% 분리수거 목표는 2029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는 두 개의 개별 수거 목표이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제도 참여 의무에 대한 면제는 형태별로 개별적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제50조제5항은 2026년까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범위에 속하는 모든 1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또는 금속 음료 용기의 80%를 초과하여 수거하는 회원국은 보증금반환제도 구축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회원국은 또한 면제 신청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할 때 보증금반환제도를 구축하지 않고 2029년까지 어떻게 90% 분리수거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이 보증금반환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국내 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0조제9항에 따라 회원국은 유럽연합 기능 조약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한 제50조 및 부속서 X에 명시된 최소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보증금반환제도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예컨대 회원국은 1회용 유리 음료병 및 음료용 판지 상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제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도록 권장되며, 포도주, 증류주 또는 유제품 기반 제품과 같이 제50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반환제도(DRS) 의무 대상이 아닌 음료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은 그러한 규칙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유념하여야 하며 [2009년 5월 9일 자] 「음료 포장재, 보증금 제도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집행위원회 공고」

(유럽연합 관보 C편 제107호, 2009. 5. 9., 1~8면)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재사용 가능 포장재, 특히 재사용 가능 유리 음료병에 대한 보증금반환제도(DRS)를 장려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포장재 반납이 최종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거된 포장폐기물의 순도를 높이고 쓰레기 투기를 줄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최소 요구 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0조제9항).

3) 부속서 X의 '국경 간 거래량이 많은'이란 무엇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부속서 X는 국경 간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보유한 회원국에 대하여 지정된 수거 장소에서 다른 회원국의 보증금반환제도 포장재를 수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종 사용자가 포장재를 구매할 때 부과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회원국은 부속서 X의 최소 요구 사항 준수를 보장할 때 이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최소 요구 사항은 2025년 2월 11일 이후에 구축된 보증금반환제도에 적용되는 반면, 기존 보증금반환제도의 경우 2029년 1월 1일까지 90% 분리수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2035년 1월 1일부터 해당 요구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0조제11항). 보증금반환제도를 도입하는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음료 포장재의 분리수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간 국경을 넘는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서로 다른 회원국의 보증금반환제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협력하여 2038년까지 이러한 조치의 우수 사례를 평가하여야 한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0조제11항).

4) 모든 보증금반환제도(DRS)는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부속서 X 제f호에 규정된 최소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5년 2월 11일 이후에 구축된 1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및 금속 용기에 대한 보증금반환제도는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구축된 보증금반환제도는 최초 검토 시 또는 늦어도 2029년 1월 1일까지 회원국이 90% 분리수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2035년 1월 1일까지 비영리로 전환하여야 한다(「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0조제11항).

5) 우유, 포도주 및 증류주 포장재도 90% 분리수거 목표에서 제외되는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 포도주 또는 포도주 및 증류주와 유사한 제품이 담긴 1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및 금속 용기는 보증금반환제도 참여 의무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 목표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아가 회원국은 이러한 제품의 포장재를 자국의 보증금반환제도에 포함할지에 대해 유연성이 있다.

6) 1회용 보증금반환제도는 생산자를 대행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등록 및 보고할 수 있는가? [신규]

생산자책임기구에 필적하는 조직적, 기술적, 재정적 체계를 갖추고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50조에 따라 구축된 1회용 포장재 보증금반환제도는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를 대행하여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 및 보고할 수 있다.

유럽연합과의 연락 방법

직접 방문

유럽연합 전역에는 수백 개의 유럽 다이렉트(Europe Direct) 센터가 운영 중이다. 가장 가까운 센터의 주소는 온라인 (european https://european-union.europa.eu/contact-eu/meet-us_en union.europa.eu/contact-eu/meet-us_e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또는 서면 문의

유럽 다이렉트는 유럽연합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다음 방법을 통해 이 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다.

- 무료 전화: 00 800 6 7 8 9 10 11(일부 통신사의 경우 통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일반 유선 전화: +32 22999696,
- 온라인 양식: european-union.europa.eu/contact-eu/write-us_en.

유럽연합 정보 검색

온라인

유럽연합의 모든 공식 언어로 작성된 유럽연합 관련 정보는 유로파(Europa) 웹사이트(european-union.europa.e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 간행물

유럽연합 간행물은op.europa.eu/en/publications에서 열람하거나 주문할 수 있다. 무료 간행물은 유럽 다이렉트 또는 해당 지역의 문서 센터 (european-union.europa.eu/contact https://european-union.europa.eu/contact-eu/meet- us_en eu/meet-us_en) 에 문의하여 여러 부를 수령할 수 있다.

유럽연합 법령 및 관련 문서

1951년 이후 제정된 모든 공식 언어본의 유럽연합 법령을 포함한 법률 정보에 접근하려면 유로렉스(eur-lex.europa.eu)를 방문한다.

유럽연합 공개 데이터

data.europa.eu 포털에서는 유럽연합의 기관, 기구 및 전문 기관이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 세트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으로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해당 포털에서는 유럽 각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세트에도 접근할 수 있다.

유럽연합 출판국
법률 | 데이터 | 간행물